

꿈·지성·감성으로 비상하는 행복한 학교

2021학년도

동양교육과정

DONGYANG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http://www.jb-dongyang.es.kr>
55346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9
교장실 244-3165 교무실 243-8106
행정실 243-1051 FAX 243-8107





이 물음과 대답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구상한 약속으로 동양교육가족의 학교살이에 대한 생각이다.

아이들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이다. •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 말 잘 듣는 것도 좋지만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한다.
교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 •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핀다. •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 삶을 가꿔 주는 사람이다.
학부모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학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이 즐거운 곳이다. • 가르침이 보람된 곳이다. • 마음이 통하는 곳이다. • 행복한 곳이다.
배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할 때 가치가 있다. •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배우는 것이 즐겁다. • 실패에서 배운다. 실패를 비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르침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 아프지 않고야 할 수 없는 일이다. • 아이들의 삶을 보듬으며 내 삶이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평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를 따지고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 삶을 살펴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배움의 과정이며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차례

I. 우리학교를 소개합니다.	1
II. 우리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8
III.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요: 혁신학교 운영	9
1. 꿈을 키우는 학교: 자기주도적 진로개척능력 신장	9
2. 지성이 쌓이는 학교: 학생 맞춤형 참학력 신장	9
3. 감성이 풍부한 학교: 융합형 체험중심 창의·인성·감성 교육 활동	9
4. 특색교육 [심미적 음악교육을 통한 고운 심성 함양]	10
5. 노력중점 [단계별 영어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11
6.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12
IV. 동양교육의 짜임새는 튼튼해요	13
1. 교육과정 편제	13
2. 시간 배당	13
3. 학년별 교과별 시간 운영계획	14
4. 학년(군)별 연간 시간 배당	16
V.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요	17
1. 수업일수 및 수업 시간 운영 기준	17
2. 학사일정	18
3. 학교행사	20
4. 행사주간 운영계획	22
5. 하루 생활 모습	23
6. 학년별 기준 시간표	24
VI. 교과는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25
VII.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깊어져요.	28
VIII. 평가는 성장과 발달을 도와줘요.	38
IX. 방과후학교로 채워요.	39
X. 아이들과 교육이 중심이에요.	40

우리학교를 소개합니다.

1. 학교 연혁

년 월 일	주 요 연 혁
1946. 11. 15	소양국민학교 화심분교 인가
1948. 11. 20	동양국민학교 승격 개교
1984. 03. 08	동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03. 01	동양초등학교로 개칭
2017. 03. 01	제21대 최성현 교장 부임
2019. 03. 01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3년, ~ 2022.2.28.)
2021. 01. 13	제70회 졸업(졸업생 총 3,089명)

2. 학급편제 및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유치원	총계	
학 급 수	1	1	1	1	1	1	5(1)	1	6(1)	
학 생 수	남	2	4	2	6	4	3	21	1	22
	여	0	5	1	2	8	1	17	3	20
	계	2	9	3	8	12	4	38	4	42

❖ 6학년 복식학급 ❖ 조건부 유예 1명(5학년)

3. 연도별 학생수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생 수	43	44	45	42	49	49	39	41	38
증 감	감(-5)	증(+1)	증(+1)	감(-3)	증(+7)	-	감(-10)	증(+2)	감(-3)

4.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원							일 반 직										총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보건교사	유원교사	계	행정실장	사무원	운전원	교무실무사	돌봄전담사	유원방류	시설관리요원	청소원	통학버스안전지도사	계	
남	1	.	.	4	.	.	5	.	.	1	.	.	.	1	.	.	2	7
여	.	.	1	1(1)	0	1	3(1)	1	1	.	1	1	1	.	1	1	7	10(1)
계	1	0	1	5(1)	0	1	8(1)	1	1	1	1	1	1	1	1	1	9	17(1)

❖ ()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5. 학교 현황

구 분	건물부지	체육장	학교림	계
넓이(m ²)	2,105	9,170	231,371	242,646

6. 시설 현황

구 분	보통 교실	특 별 실									관 리 실			부속시설	
		과학실	과학 자료실	컴퓨터실	도서실	급식실	다목적실	강당	보건실	돌봄방	교장실	교과실	행정실	화장실	창고
수	6	1	0.2	1	1	1	1	1	0.3	1	0.5	1	0.5	4	2

7. 학생 실태

가. 가정환경 현황

구분	편부	편모	조손	소년소년장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다문화	Group home
학생수	.	1	1	.	2	1	5	2

나. 영역별 실태

영역	실태	학교교육과정 반영사항(시사점)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기초·기본학습력 보강 필요 활동중심의 교육활동을 선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기본학습력 신장을 위한 지도대책 마련 체험활동 위주의 현장학습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생활습관이 정착되지 않음 (복도통행, 식사예절, 인사예절 등) 언어순화 및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이 필요 나눔 및 배려 문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꾸준한 인성교육 다모임을 통한 존중받는 학교문화 실천 나눔과 배려의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실천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에 비해 체력이 왜소한 학생이 많고 전반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함 보건, 위생, 청결 인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체력 단련을 위한 뉴스포츠 활동 전개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지도 지속적인 보건·위생교육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물 사용 방법 미숙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함 선후배간, 교우간 사이가 원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물 사용규칙 지키기 지속적 지도 캠프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학생 다모임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특기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희망 개인의 소질개발 기회 부족 창의교육 선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강화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아 가정학습지도가 소홀함 Group home 거주학생의 자신감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결손 및 다문화 학생의 1:1 결연을 통한 지도 학부모 상담 및 다양한 방법의 교육 활동 안내 개별 상담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고취
학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이 통학버스로 등하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통학버스 사용 지도

다. 지역사회 실태

영역	실태 분석	학교교육과정 반영사항(시사점)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 지형: 산간 지형 • 기후: 기후 연평균기온 13.34°C, 1월 평균기온 -0.5°C, 8월 평균기온 26.2°C(평년값)를 보임. 연평균강수량 1,313.1mm 내외임 • 관광자원: 벚꽃 터널, 위봉폭포, 대야 저수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대설로 인한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과 학교 버스의 탄력적 운행 ▶귀농, 귀촌으로 전입 학생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지원 ▶천혜의 자연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6,455명 • 취락구조: 신원리, 신촌리, 해월리, 화심리가 학구(학교버스 이용)이며 자연마을 형태로 전형적인 농산어촌 취락구조를 보임 • 재정: 농업을 주업으로 지역과 주민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재 탐방,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애향심 고취 ▶마을별 학생 현황 파악 및 생활지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 예산 지원 확대(교육과정 중심 예산 편성)
인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전주-진안 간 국도와 밤티 고개를 넘어 동상면, 고산과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음 • 통신: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가정이 많음 • 보건환경: 소양보건의료원 통원 가능 • 생활: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정, 그룹홈 비율이 높음, 전주시 인접 지역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많은 기능을 전주에 의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 및 소양면의 교육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의 질 향상 노력 ▶같은 행정구역인 소양면에 4개의 학교가 있고, 타 지역 전출학생 증가로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정적인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교통안전교육 철저 실시 ▶학교의 정보통신환경을 활용한 SW교육 활성화 ▶소양보건지소, 소양면신화보건진료소와 연계한 학생 건강증진 노력 ▶다문화가정 이해 프로그램 운영과 학력 신장 노력 ▶저소득층 가정 적극 지원
인적·물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반편견입양교육 전문가 • 문화환경: 송광사, 위봉사, 위봉산성 등의 지정 문화재 등이 산재하여 있음 • 체육시설: 전주의 체육시설 활용 가능함 • 체험시설: 대승한지마을, 고산자연휴양림, 대야수목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 활용 가능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인사를 외부 강사로 적극 활용 ▶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직접적 참여 ▶체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8. 2020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추출

❖ 혁신학교 평가용 설문결과(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별도 첨부

○ 주제1. 선택과 집중의 행사주간 운영 및 특색 있는 학급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원래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나 사회적 상황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사주간 운영,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학년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짐
- 코로나-19로 인해 기획했던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선생님들의 협력을 통해 대안으로 마련한 활동들로 충분히 대체되었다고 생각
- 코로나 사태에 할 수 있는 최선
-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학교 행사를 대폭 축소
(내년에는 행사주간을 아예 없애거나 1학기에 한 주 정도만 교내행사 위주로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활동들이 취소되어 아이들이 참 아쉬워했는데 그 점이 보완되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음
- 2021학년도 행사주간 일정 수립 시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1, 2안을 모두 마련, 교육과정 수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 주제2. 기초학력 신장 방안 및 부진아 지도 방법

-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방과후에도 기초학력 신장 및 부진아 지도를 시행하면 가장 좋으나 소규모학교로서 교사 개인별 가지고 있는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대안 마련 필요
- 교과 교육 활동에서 최대한 기초학력을 책임지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맞춤형 학습지원학교의 시스템 지속운영
- 2021학년도부터 맞춤형 지원학교 대상이 3~6학년으로 변경되고 1~2학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 이에 대비한 기초학력 신장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방과후 담임 보충지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문제집 활용 교육, 기초연산+바른 글씨+한자 교육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꾀한 뒤 학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친구들도 놓치지 말아야 함

○ 주제3. 성장평가 운영 방법

- 학년도 준비 기간에 성장평가에 대한 상호 간의 충분한 의견 및 정보 교류
- 적극적인 예산 편성(학교 예산, 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지원 예산 등), 연중 집중 지도를 통해 학습부진아 구제
- 학기당 1회 정도 학습부진아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후 학습부진아 지도에 반영
- 성장평가는 올해처럼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마다 간단한 소감과 피드백 해야 할 부분을 적어 부모님에게 보내주는 방법이 효과가 좋았음
- 부진아의 경우에는 학교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따로 지도해 주고 싶으나 방과후라는 수업과 현실적인 시간적 여건 때문에 어려움
- 학습부진아 판별을 위한 구체적 도구가 필요
- 현행 유지

○ 주제4. 학생자치 및 동아리 운영

- 다모임에서 행사주간 계획 및 반성이 같이 논의되어 정체성 혼란, 자율동아리나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 필요
- 자율동아리 활동 시간 확보 필요
- 자치의 기본적인 규칙과 방법을 학습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하나의 주제를 길게 잡고 생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음
- 중간놀이 시간을 자율동아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모색 필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협의하여 운영
- 자율동아리의 주제 선택은 아이들의 희망대로 하되, 실현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 유무에서 선생님들이 조절해줄 필요가 있음

○ 주제5. 학부모자치

- 맞벌이 및 원거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학부모회의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고 있음
- 자녀 양육과 관련된 도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서의 학부모자치를 운영해보면 좋겠음

○ 주제6. 전문적 학습공동체

- 온라인 학습 대비 역량 강화
- 독서 토론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수업 연수 등
-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희망
- 2주에 1회씩 다양한 주제의 연수가 운영되었으면 함
(독서, 생태체험, 공예, 체육활동, 영화관람 등)
- 교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연수를 전북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연수 형태로 추진
- 독서 토론은 월 1회 프리한 진행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음
- 주제를 여러 개 하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어려웠음. 한 학기에 주제는 하나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좋겠음
- 교직원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주제 선정(예, 캘리그래피, 꽃꽂이 등 여러 선택지를 제공한 뒤에 희망을 받아서 주제 선정)

○ 주제7. 기타 협의 사항

◆ 소양 혁신 교육 벨트 운영

- 소양 권역별 동 학년 모임(네트워크 구축)
- 아카데미 형식의 변화(학년별 실습 연수, 학년 교육과정 연구 연수)
선생님들의 의사 반영이 안 된 것 같음, 희망 사항을 받아서 연수 과정을 기획하면 좋겠음
- 소양면의 특색을 중심으로 잡고 마을별 특성을 살린 마을 교육과정 만들기
우리 주변부터 살펴보기(동양- 동양 특색연결 교육과정, 예) 송광-송광사 연결
→ 코딩데이 때 방법은 코딩, 주제는 동양마을로 정해서 운영해보기

◆ 완주교육협력지구 및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

- 금요일 태권도 수업은 내년에 제외
- 원어민 여부 및 문화예술 강사 배치 확인
- 뮤지컬은 강사가 매우 열정적이고 교육적이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아이들의 요구와 흥미가 매우 높았음. 연극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강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021학년도에는 뮤지컬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 좋겠음

- 놀이 체육은 강사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1, 2학기 연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설문조사 결과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새로운 교구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뉴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겠음
저학년과 고학년의 레벨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함
- 방송 댄스는 생각보다 표현영역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지속운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창의 공예는 다양한 공예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틀림없으나 키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콘텐츠였기에 지속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함
→ 2021학년도에는
완주교육협력지구: 놀이로 즐기는 수업, 학생중심 프로젝트 수업, 학교로 찾아오는 연극
학교-마을교육과정: 뮤지컬과 놀이 체육 두 영역만 신청
(뮤지컬이 학교-마을교육과정에 없는 경우는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나 혁신학교 프로젝트 수업 예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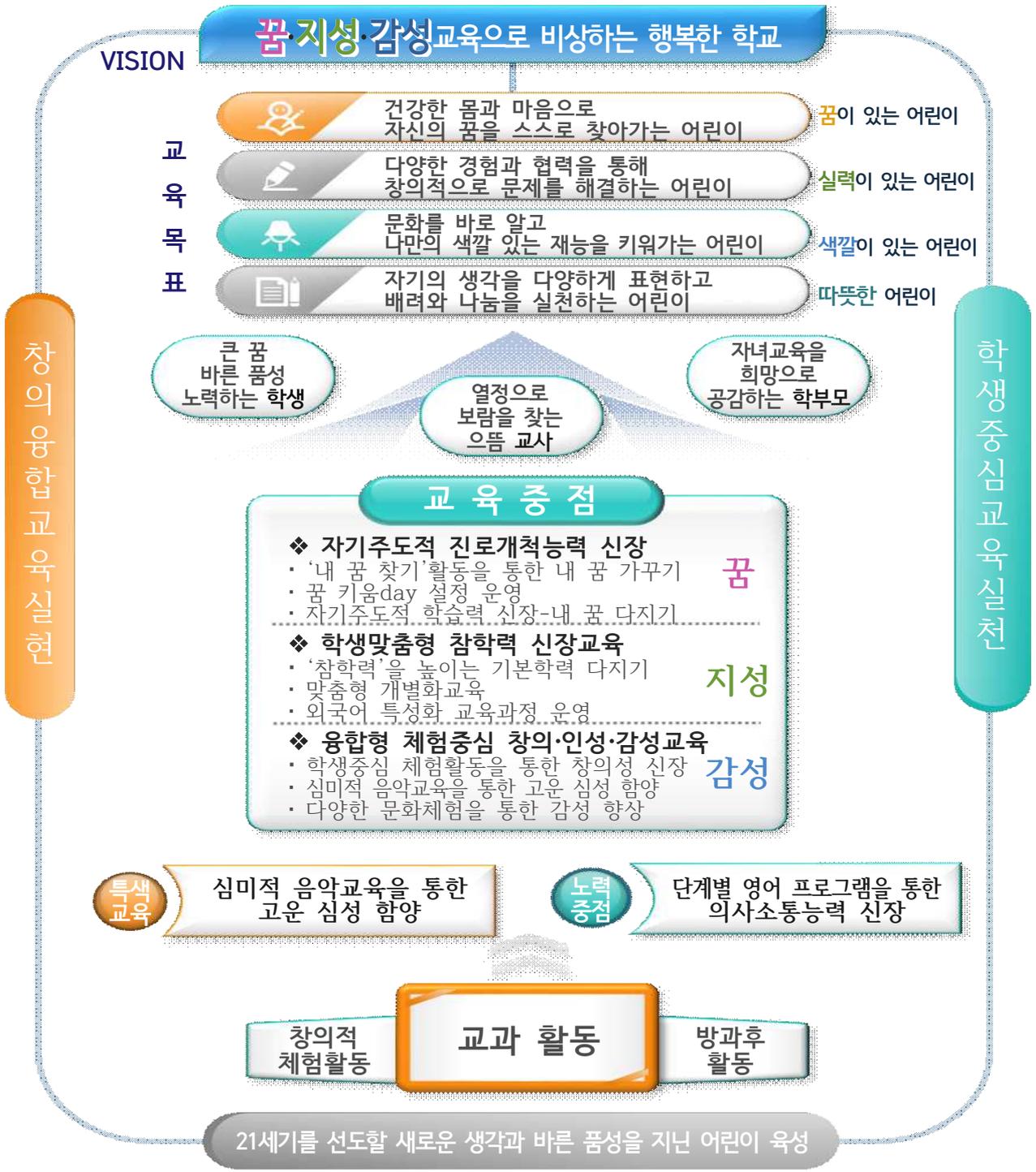
○ 주제8. 시설이나 자료 보완 희망

- 냉난방기 수선 및 교체
- 교무실과 행정실 시설 정비(공기 청정기, 컵 건조기 등)
- 보건실 물품 구입
-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자주 고장 나는 변기, 온수 기능)
- 천장 누수 및 이로 인한 곰팡이 문제
- 화장실 변기, 세면대 수압 보수 공사

II

우리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동양교육가족은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큰 꿈을 품고, 따뜻한 사랑을 키워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 참된 민주시민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요. : 혁신학교 운영

1

꿈을 키우는 학교: 자기주도적 진로개척능력 신장

함께	만들어요!
내 꿈 찾기 활동을 통해 꿈을 가꾸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 검사를 통해 자기이해하기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이력관리하기 다양한 활동으로 진로정보탐색하기
꿈 키움 Day로 꿈을 찾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중심 진로체험학습하기 학생자치회 다모임을 통한 다양한 꿈 키움 활동하기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꿈을 다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C 학습자역량 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SW)교육 활성화하기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플래너 쓰기

2

지성이 쌓이는 학교: 학생맞춤형 참학력 신장

함께	만들어요!
참학력을 높이는 기본학습을 다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학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하기 참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하기 수업나눔과 컨설팅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하기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실시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인수학급 특성을 살린 교과학습 전개하기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하기 맞춤식 개별화교육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하기
외국어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수업하기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하기

3

감성이 풍부한 학교: 융합형 체험중심 창의·인성·감성교육 활동

함께	만들어요!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활동 중심교육을 실시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 지성, 감성, 행복학교 운영하기 완주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기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만들기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감성을 높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하기 방과후 문화예술 발표회 운영하기 활동중심 예술교육, 문화체험교육 활동하기
건강증진 및 고운 심성을 함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체육 활동 및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하기 악기 지원사업과 연계한 음악교육 활성화하기

1 목표

심미적 음악 교육으로 음악적 감성 계발 및 바른 인성 함양

2 방침

- 함께 하는 음악 활동을 통한 소리의 어울림 공유
-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적인 표현 능력 신장
- 1인1악기 연주 기능을 갖추고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기르기

3 영역별 세부추진계획

영역	추진내용	대상	시기	담당	예산(천원)
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자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소양을 위한 음악 관련 도서 및 음원 구입 - 1인 1악기 기능을 위한 악기 구입 지원 •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음악 활동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요 부르기를 위한 수준별 동요 선정 - 1인 1악기 기능을 위한 단계별 악곡 선정 • 음악이 흐르는 교실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달의 동요, 클래식 등의 학급 게시판 조성 - 쉬는 시간을 이용한 음악 감상 	전교생	3-4월 3월 연중	방과후 담임 담임	
음악의 생활화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명상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클래식과 함께 하는 월요일 아침 명상 시간 운영 • 동요 10곡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로 선정된 동요 월 1곡 부르기 • 1인 1악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또는 틈새시간 활용 1인 1악기 연주 연습 • 음악이 흐르는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악 감상 시간 운영 - 점심시간을 활용한 악기 연습 •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악기기능 갖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올린(1-6년), 통기타(4-6년) 	전교생	매주 월요일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담임 담임 담임 담임 방과후	
음악적 소양 뽐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감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음악 감상회 시간 갖고 다양한 활동 운영 • 방과후 발표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생 연주회(동요 및 연주 발표회) 	전교생	연2회 연1회	담임 방과후	

4 기대효과

- 바른 자세와 주법 및 악기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는 능력 신장
- 리듬감, 음정감, 화음감 등의 음악적인 감각을 향상시키고 음악에 대한 흥미 높임

1 목표

단계별 영어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표현 능력 신장

2 방침

-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보다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전개
- 학생의 영어 습득과정을 고려하여 쉽고 이해 가능한 학습내용과 다양한 방법 사용
-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외래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양성

3 영역별 세부추진계획

영역	추진내용	대상	시기	담당	예산(천원)
영어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 학급 영어 환경 판 구성 - 3~6학년 학급 환경 판 영어코너를 통한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	3-6학년	3월	담임	
	• 다양한 영어 자료 학급 구비 - 영어동화, 게임자료, 단어카드, 사전 등 - 쉬는 시간을 이용한 영어 게임 지도 및 활용	3-6학년	3월	담임	
흥미 위주의 영어 수업	• 의사 소통 중심 영어수업 확대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전개	3-6학년	연중	담임	
	• 원어민교사와 담임교사 협력 팀티칭 수업 전개 - 주 1회(1또는 2시간) 원어민 교사와 협력 수업 전개	3-6학년	"	담임	
	• 흥미 강화 수업 - 찬트, 노래, 게임, 역할 놀이 등 다양한 방법 사용 - 학급 내 영어 장기자랑	3-6학년	"	담임	
	• 표현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 Step by Step 영어단원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3-6학년	"	영어,담임	
영어 체험 활동 기회 확대	•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어 교육 전개 - 영어 노래, 팝송 배우기 - 영어 스토리북, 게임, 퀴즈, 역할 놀이를 활용한 영어 교육	3-6학년	연중	담임	
	• 방학 중 영어캠프 연 2회 운영 - 활동 중심의 신나는 영어캠프 운영	3-6학년	방학중	영어	
	•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 3~6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2~3시간 운영	3-6학년	연중	방과후	

4 기대효과

- 영어에 대한 노출 기회가 확대되어 실용영어의 사용능력 향상
- 다양한 영어 체험학습 기회의 확대로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준비기(2017학년도)

◆ 학교발전 계획 수립기 ◆

- 학교발전 계획 의견 수립 및 확정 발표
- 창의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수립
- 특색 있는 학급 교육과정 수립
-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꿈 가꾸기 Day 활성화
- 독서·논술 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과정 편성
- ▶ 각종 문화체험활동 계획 수립
- 방과후교육활동 재협의 개설
-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행사 수립
- 교실 수업혁신 강화 및 연수지원
- 학생 맞춤형 참학력 신장 학습지원
- 꿈·지성·감성교육 강화
- 교수·학습자료 재정비 (컴퓨터, 과학교구, 놀이 시설, 체육기구, 기타 등)
- 자율학교 추진 계획 수립 신청
- 사교육비 절감 20% 목표 달성
- 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 모색
- 교내 진입로 공사 예산 신청
- 강당 후로링 교체 예산 신청(추경)
- 학교 숲길 조성
-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 교육활동 중심 업무 조직(년말)
- 도색공사를 위한 불용액 확보(년말)
- ▶ 2-3 년에 걸쳐 공사 완료
- 실내외 환경 정비
- 학교시설 안전 시설 재정비
- 전 학생 위생시설 확보 (위생 칫솔함 구비 설치)
- 교육혁신, 예술꽃씨앗 학교, SW교육선도학교, 기타 시범학교 교육수용자와 협의 후 추진계획 수립 신청

적용기(2018-2019학년도)

◆ 학교발전 적용기(2년간) ◆

-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년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
- 학년별 핵심역량 강화 전략
- 학년별 특색사업 및 노력중점 사업 운영
- 교육중점 3개 시책 추진
- 교육목표별 4개 교육사업 추진
- 자율학교 -학생유입확보
- ▶ 6학급 편성 확보
- 외국어교육의 내실화
- 학교 운영 중간평가 실시
- 문화예술체험활동 추진
- ▶ 제주도현장학습 등 다수
- 교사 수업활동 및 각종 연수,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학습부진아 20% 이내 확보
- 교수학습자료 구입 확보 (컴퓨터, 디지털 현미경, 과학 기구, 체육기구, 기타 등)
- 학생성장평가제 운영
- 학생상담활동 강화
- 독서·논술 교육 운영 발표회
- 사교육비 절감 50% 목표 달성
- 학부모회 및 기타 위원회 활성화
- 실내외 녹색 체험 환경 조성 완료 (숲길, 자연생태학습장 활용)
- 특색 지정 학교 운영 (교육혁신, 예술꽃 씨앗 학교, SW 교육선도학교, 기타 시범학교 등)
-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제로 달성
- 각종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 진입로 공사 시행 추진
- 강당 후로링 공사 추진
- 학부모 만족도 80% 이상 달성
- 진입로공사 지속적 추진
- 도서실 재정비
- 과학실 및 컴퓨터실 기자재 재정비 및 교체

정착기(2020~2021학년도)

◆ 학교발전 정착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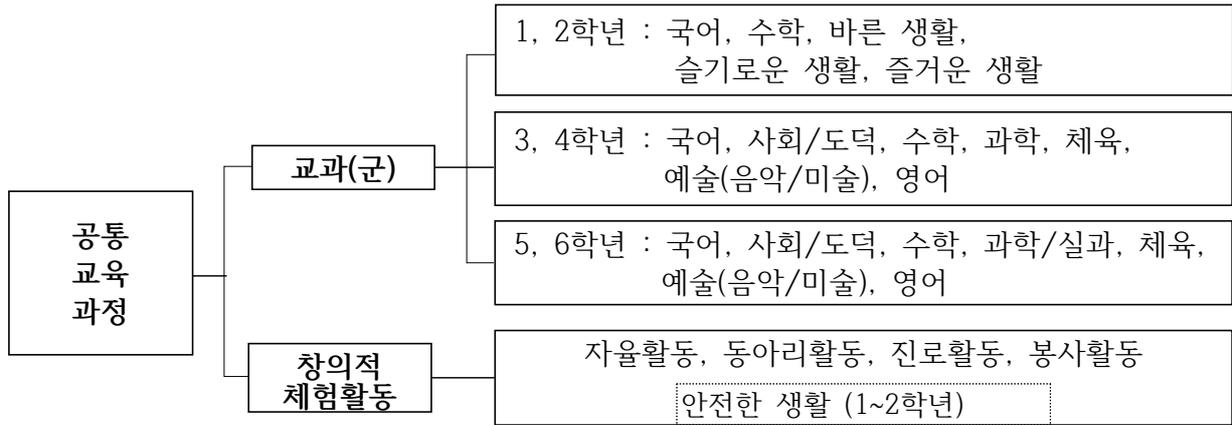
-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학년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 강화
- 학년별 핵심역량교육 강화
- 학년별 특색사업 및 노력 중점 사업 운영
- 혁신학교 -학생유입확보
- ▶ 6학급 편성 확보
- ▶ 전교생 60명 이상 유입 확보
- 학교 운영 종합평가 실시
- ▶ 교육 활동 컨설팅 및 환류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융합 교육 프로그램 반영 확대
- 교육과정 질 관리 반영
- 꿈·지성·감성·행복학교 운영
- 학교폭력, 안전사고 제로화
- 학교장 상담 활동 충실
-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 개최
- 각종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 학부모 만족도 100% 달성



N

동양교육의 짜임새는 튼튼해요.

1. 교육과정 편제



2. 시간배당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바른 생활 128	272	272
	과학/실과	슬기로운 생활 192	204	340
	체육	즐거운 생활 384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으로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다.
-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총 수업 시간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체육, 예술(음악/미술)교과의 수업시수는 기준 시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과(군)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증배할 수 없다.
- 1~2학년군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336시간에는 1학년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안전한 생활교육과정은 별도 편성·운영한다.
- 1~2학년군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 국가 교육과정의 64시간은 1학년 30시간, 2학년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학교는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함.
 - 이수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자,동,봉,진)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6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학년별 교과별 시간 운영 계획

가. 학년별 수업 시수

학년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계	비고
1학년		4	4(5)	5	5	4	23	※ 학기말: 이수시수 조정기
2학년		4	5	5	5	4	23	
3학년		5	5	5	6	5	26	
4학년		5	5	5	6	5	26	
5학년		6	6	5	6	6	29	
6학년		6	6	5	6	6	29	

나. 교과별 주당 기본 시수

※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당수업시수는 고정하지 않음

구분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창의적체험활동	계
1학년	6	4	2	3	4	4	23
2학년	6	4	2	3	4	4	23

구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계
3학년	5	1	3	3	3	·	3	2	2	2	2	26
4학년	5	1	3	3	3	·	3	2	2	2	2	26
5학년	5	1	3	3	3	2	3	2	2	3	2	29
6학년	5	1	3	3	3	2	3	2	2	3	2	29

※ 계절에 따라 교과(군)운영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음

다. 교과 전담교사 및 외부강사 활용 수업 시간배당

학 년	학급 수	교과 전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교사		학급담임 주당시수
		과학	미술	영어 (월어민)	음악 (국악)	체육 (무용)	국어/음악 (뮤지컬)	체육 (뉴스포츠)	
1학년	1	·	·	·	연32	연15	연16	연36	23
2학년	1	·	·	·	(연32)	연15			23
3학년	1	3	2	(2)	연31	연15	연16	연36	21
4학년	1	3	2	1	연31	연15			21
5학년	1	3	2	2	연32	연15	연16	연36	24
6학년	1	3	2	2	(연32)	연15			24
계	6	12	8	5	126	90	32	72	

다-1) 문화예술 강사(국악)

과목	강사명	전체 배정시간	주당시간 (주)	학년 (반편성)	요일 (교시)	운영장소	비고
국악 (음악)	천양희	126	4 (31주)+2	1-2, 3-6, 4, 5 (4개반 운영)	목 (1~4교시)	도서관	3.18(목)~

***1교시(1-2학년), 2교시(5학년), 3교시(3-6학년), 4교시(4학년)**

[1학기-16주] 03.18 / 03.25 / 04.01 / 04.08 / 04.15 / 04.22 / 04.29 / 05.06
05.13 / 05.27 / 06.03 / 06.10 / 06.17 / 06.24 / 07.01 / 07.08

[2학기-15주] 08.26 / 09.02 / 09.09 / 09.16 / 09.23 / 09.30 / 10.07 / 10.21
10.28 / 11.04 / 11.11 / 11.18 / 11.25 / 12.02 / 12.09

[+2] (1-2, 3-6학년 : 12.16)

다-2) 문화예술 강사(무용)

과목	강사명	전체 배정시간	주당시간 (주)	학년 (반편성)	요일 (교시)	운영장소	비고
무용 (체육)	소화	90	6 (15주)	1-6 (학년별 운영)	금 (1~6교시)	도담관	4.9(금)~

***1교시(1학년), 2교시(2학년), 3교시(5학년), 4교시(4학년), 5교시(3학년), 6교시(6학년)**

[1학기-8주] 04.09 / 04.16 / 04.23 / 04.30 / 05.14 / 05.28 / 06.04 / 06.11

[2학기-7주] 10.08 / 10.22 / 10.29 / 11.05 / 11.12 / 11.19 / 11.26

다-3) 완주교육협력지구(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뮤지컬)

과목	강사명	전체 배정시간	주당시간 (주)	학년 (반편성)	요일 (교시)	운영장소	비고
뮤지컬 (국어)	이주영 최연경	32	4차시*2회 (4주)	1~3학년/4~6학년 (2개반)	수, 금 (1~4교시)	도담관	9.1(수)~

***1·2교시(4~6학년), 3·4교시(1~3학년)**

[2학기-4주] 09.01 / 09.03 / 09.08 / 09.10 / 09.15 / 09.17 / 09.29 / 10.01

다-4) 학교-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뉴스포츠)

과목	강사명	전체 배정시간	주당시간 (주)	학년 (반편성)	요일 (교시)	운영장소	비고
뉴스포츠 (체육)	곽승미	72	2차시*2반 (18주)	1~3학년/4~6학년 (2개반)	화 (1~4교시)	다목적실 및 강당	4.6(화)~

***1·2교시(4~6학년), 3·4교시(1~3학년)**

[1학기-11주] 04.06 / 04.13 / 04.20 / 04.27 / 05.11 / 05.25
06.01 / 06.08 / 06.15 / 06.22 / 06.29

[2학기- 7주] 08.31 / 09.07 / 09.14 / 09.28 / 10.05 / 10.19 / 10.26

4. 학년(군)별 연간 시간 배당

가. 1~2학년군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 과	국 어	210			91	119	210	238			119	119	
	수 학	120			52	68	120	136			68	68	
	바른 생활	60			26	34	60	68			34	34	
	슬기로운 생활	90			39	51	90	102			51	51	
	즐거운 생활	180			78	102	180	204			102	102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200 (30)	+5	+2	137 (16)	70 (14)	207	136 (34)	+5	+2	69 (18)	67 (16)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60	+5	+2	423	444	867	884	+5	+2			0

나. 3~4학년군

구분 / 학년		3학년						4학년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 과	국 어	204			102	102	204	204			102	102	204
	사 회	102			51	51	102	102			51	51	102
	도 덕	34			17	17	34	34			17	17	34
	수 학	136			68	68	136	136			68	68	136
	과 학	102			51	51	102	102			51	51	102
	체 육	102			51	51	102	102			51	51	102
	음 악	68			34	34	68	68			34	34	68
	미 술	68			34	34	68	68			34	34	68
	영 어	68			34	34	68	68			34	34	68
창의적 체험활동		102	+3		54	51	105	102	+3		54	51	105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986	+3		496	493	989	986	+3		496	493	989

다. 5~6학년군

구분 / 학년		5학년						6학년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기준 시수	증감 시수		이수 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교 과	국 어	204	204			102	102	204			102	102	204
	사 회	102	102			51	51	102			51	51	102
	도 덕	34	34			17	17	34			17	17	34
	수 학	136	136			68	68	136			68	68	136
	과 학	102	102			51	51	102			51	51	102
	실 과	68	68			34	34	68			34	34	68
	체 육	102	102			51	51	102			51	51	102
	음 악	68	68			34	34	68			34	34	68
	미 술	68	68			34	34	68			34	34	68
영 어	102	102			51	51	102			51	51	102	
창의적 체험활동		102	102	+1	-1	52	50	102			52	50	102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088	1,088	+1	-1	545	543	1,088			545	543	1,088

V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요.

1.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운영 기준

- 가.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대통령령 제23241호)
- 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4조)
 - 1) 1학기 : 2021년 3월 01일(일) ~ 2021년 8월 22일(일)
 - 2) 2학기 : 2021년 8월 23일(월) ~ 2022년 2월 28일(월)
- 다.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기후, 학교 실정, 학생 실태, 지역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운영한다.
- 라. 연간, 학기 간, 월별, 주별 과목당 이수 시간 수가 결정되면 단원별 내용에 따라 시간 수를 증배 또는 감축하여 연간 시간 운영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 마. 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교 실정,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사.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문화예술교육(국악, 영화), 독도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아. 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사주간 및 학급별 프로젝트학습을 운영한다.
- 자. 실기 비중이 큰 교과를 선택하여 주당 18시간을 기준으로 학교 규모와 담당 업무의 경중에 따라 교과전담교사제를 운영한다.
 - 1) 미술: 3~6학년, 주당 2시간 (8시간) 2) 과학: 3~6학년, 주당 3시간 (12시간)
- 차. 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의 범교과 교육활동 시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영역	교육과정반영시수	시수확보
안전교육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포함하여 연간 51시간 이상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장애인식 개선(장애 인권교육)	학기당 1회	
수영 교육	연 10시간 초3~4	
보건교육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권장)	
성교육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 포함) 연 15차시 이상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연 2차시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이론(5학년), 실습(6학년) 연 2차시	
학생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학년별 연간 6차시 이상	
영양·식생활 교육	2회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	연간 2시간 이상 권장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연 6시간 이상(성폭력 예방 연 3시간 포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연 1시간 이상	
인성·인권교육	학기별 2시간 이상(연4시간 이상)	
소방훈련교육	연 2회 이상	

2. 2021학년도 동양초등학교 학사일정 (●-급식 미실시) 소방훈련일정+혁신연수일정 확인필요

완주교육협력지구(☉) / 학교-마을교육과정(☎) / 문화예술지원강사(☎) / 보건의업(☉)

1학기: 2021.3.1 ~ 8. 22.

일/월	3		4		5		6		7		8		
1	월	삼일절	목	☎	토		화	☎ ☉	목	☎	일	여름방학	
2	화	입학식, 시업식	금		일		수		금	안전체험(2,5학년) 방과후종료	월	여름방학	
3	수	새학기적응활동	토		월	재량휴업일	목	☎	토		화	여름방학	
4	목		일		화	재량휴업일	금	☎	일		수	여름방학	
5	금		월		수	어린이날	토		월	방학캠프(~15)	목	여름방학	
6	토		화	☎ ☉	목	☎	일		화		금	여름방학	
7	일		수		금		월		수	혁신공동연수	토	여름방학	
8	월		목	☎	토		화	☎	목	☎	일	여름방학	
9	화		금	☎	일		수		금		월	여름방학	
10	수		토		월		목	☎	토		화	여름방학	
11	목		일		화	☎	금	☎	일		수	여름방학	
12	금	다모임(임원선거)	월	학생건강검사	수		토		월		목	여름방학	
13	토		화	☎	목	☎	일		화		금	여름방학	
14	일		수		금	☎	월		수	지성학교-코딩데이	토	여름방학	
15	월	상담친구사랑주간	목	☎	토		화	☎	목	지성학교-심폐소생술, 장애이해교육, 뮤지컬	일	여름방학	
16	화		금	☎	일		수	혁신공동연수	금	방학식(●)	월	여름방학	
17	수	교육과정설명회	토		월		목	☎	토		화	여름방학	
18	목	☎	일		화		금		일		수	여름방학	
19	금		월		수	부처님오신날	토		월		목	여름방학	
20	토		화	☎	목	꿈학교-①과학관 ②체험부스+영화제(●)	일		화		금	여름방학	
21	일		수	혁신공동연수	금	꿈학교-①생태원 ②인성요리교실(●)	월		수		토	여름방학	
22	월		목	☎	토		화	☎	목		일	여름방학	
23	화		금	☎	일		수		금		월	개학식	
24	수	화재대피훈련	토		월		목	☎	토		화	새학기적응활동	
25	목	☎	일		화	☎	금		일		수		
26	금		월		수	다모임, 복합개년훈련 혁신공동연수	토		월		목	☎	
27	토		화	☎	목	☎	일		화		금		
28	일		수	다모임, 환경교육 소변검사(하등학년)	금	☎	월		수		토		
29	월		목	☎	토		화	☎ ☉	목		일		
30	화		금	☎	일		수	다모임	금		월		
31	수				월				토		화	☎	
수업 일수	22		22		17		22		12		0	7	
휴일 일수	9		8		14		8		19		23	2	
1학기 계	수업일수		95일									2학기 시작일 (8.23)	
	휴일일수		81일										

일월	9		10		11		12		1		2	
1	수	☞	금	☞	월		수		토	신정	화	겨울방학
2	목	☞	토		화	☼	목	☞	일		수	겨울방학
3	금	☞	일	개천절	수		금		월		목	겨울방학
4	토		월		목	☞	토		화		금	겨울방학
5	일		화	☞ ☼	금	☞	일		수	종업식, 졸업식(☞)	토	겨울방학
6	월	상담친구사랑주간	수		토		월		목	겨울방학	일	겨울방학
7	화	☞ ☼	목	☞	일		화		금	겨울방학	월	겨울방학
8	수	☞ 교육과정설명회	금	☞	월		수		토	겨울방학	화	겨울방학
9	목	☞	토	한글날	화		목	☞	일	겨울방학	수	겨울방학
10	금	☞	일		수		금		월	겨울방학	목	겨울방학
11	토		월		목	☞	토		화	겨울방학	금	겨울방학
12	일		화	☼	금	☞	일		수	겨울방학	토	겨울방학
13	월		수	감성학교-체육(☞)	토		월		목	겨울방학	일	겨울방학
14	화	☞	목	감성학교-①수학(☞) ②책마을해리(☞)	일		화	☼	금	겨울방학	월	겨울방학
15	수	☞지역특성화훈련 혁신공동연수	금	감성학교-①수학(☞) ②산속등대진로체험(☞)	월		수	혁신공동연수	토	겨울방학	화	겨울방학
16	목	☞	토		화		목	☞(2개반)	일	겨울방학	수	겨울방학
17	금	☞	일		수	혁신공동연수	금	방과후종료	월	겨울방학	목	겨울방학
18	토		월		목	☞	토		화	겨울방학	금	겨울방학
19	일		화	☞	금	☞	일		수	겨울방학	토	겨울방학
20	월	추석 연휴	수	혁신공동연수	토		월	방학캠프(~31)	목	겨울방학	일	겨울방학
21	화	추석	목	☞	일		화		금	겨울방학	월	겨울방학
22	수	추석 연휴	금	☞	월		수		토	겨울방학	화	겨울방학
23	목	☞	토		화		목	행복학교-①스케이트 ②문화지구 누에(☞)	일	겨울방학	수	겨울방학
24	금		일		수	다모임	금	행복학교-①농심매 ②다문화, 영화제(☞)	월	겨울방학	목	겨울방학
25	토		월		목	☞	토	성탄절	화	겨울방학	금	겨울방학
26	일		화	☞	금	☞	일		수	겨울방학	토	겨울방학
27	월		수	다모임 재난대응훈련	토		월		목	겨울방학	일	겨울방학
28	화	☞	목	☞	일		화		금	겨울방학	월	겨울방학
29	수	☞ 다모임	금	☞	월		수		토	겨울방학		
30	목	☞	토		화	☼	목	다모임(입원선거)	일	겨울방학		
31			일				금		월	겨울방학		
수업 일수	19		21		22		23		3		0	
휴업 일수	11		10		8		8		28		28	
2학기 계	수업 일수						95					
	휴업 일수						94					
총 계	연간수업일수		190일		휴업일수		175일					
	1학기재량휴업일		5.3.(월)~4.(화)		2학기재량휴업일		없음					
	여름방학		21.7.17.~8.22. (37일)		겨울방학		22.1.6.~2.28. (54일)					

3. 학교행사

1학기

순	날짜	요일	행사명	대상	수업시수	교육과정편성	비고
1	3.2	화	입학식	1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행사
2	3.2	화	시업식	2,3,4,5,6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행사
3	3.3	수	새학기적응활동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적응
4	3.12	금	다모임(임원선거)	전학년	2시간	1~2교시:창체(자율)	자치
5	3.15~3.19		상담/친구사랑주간				
6	3.17	수	교육과정설명회				
7	3.24	수	소방훈련(화재대피)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행사
8	4.12	월	학생건강검사	2,3,5,6학년	1시간	4교시:체육(즐생)	
9	4.28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10	4.28	수	환경교육	전학년	2시간	2~3교시:과학(슬생)	
11	4.28	수	학생소변검사	2,3,5,6학년	1시간	4교시:체육(즐생)	
12	5.20	목	꿈학교 과학캠프	전학년	4시간	1~4교시:과학(슬생)	
13	5.20	목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행사
14	5.21	금	인성인권	전학년	4시간	1~4교시:도덕(바생)	
15	5.21	금		전학년	4시간	5~8교시:사회(바생)	
16	5.26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17	5.26	수	소방훈련(복합재난)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행사
18	6.30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19	7.2	금	안전체험	2,5학년	6시간	1~6교시:체육(즐생)	
20	7.14	수	지성학교 메이커톤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21	7.14	수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봉사)	
22	7.15	목	심폐소생	전학년	2시간	1~2교시:체육(즐생)	
23	7.15	목	장애이해	전학년	2시간	3~4교시:도덕(바생)	
24	7.15	목	학교연극	전학년	4시간	5~8교시:국어	
25	7.16	금	여름방학식	전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행사

[교육과정 조정기]

5.17(월) ~ 18(화) 8교시 / 7.5(월) ~ 13(화) 4교시 / 7.14(수) ~15(목) 8교시 / 7.16(금) 3교시

2학기

순	날짜	요일	행사명	대상	수업시수	교육과정편성	비고
1	8.23	월	여름개학식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행사
2	8.24	화	새학기적응활동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적응
3	9.6~10		상담/친구사랑주간				
4	9.8	수	교육과정설명회				
5	9.15	수	소방훈련(지역특성)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행사
6	9.29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7	10.13	수	체육대회	전학년	3시간	1~3교시:체육(즐생)	
8	10.13	수		전학년	1시간	4교시:창체(봉사)	
9	10.14	목	글방	1~2학년	4시간	1~4교시:국어	
10	10.14	목		1~2학년	4시간	5~8교시:즐생	
11	10.14	목	여행1	3~6학년	4시간	1~4교시:국어	
12	10.14	목		3~6학년	4시간	5~8교시:사회	
13	10.15	금	드림터치	1~2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14	10.15	금		1~2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행사
15	10.15	금	여행2	3~6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16	10.15	금		3~6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행사
17	10.27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18	10.27	수	소방훈련(재난대응)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행사
19	11.24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자치
20	12.23	목	겨울놀이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자율)	적응
21	12.23	목		전학년	4시간	5~8교시:음악(즐생)	
22	12.24	금	어울마당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자율)	행사
23	12.24	금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적응
24	12.30	목	다모임(임원선거)	전학년	2시간	1~2교시:창체(자율)	자치
25	1.5	수	종업식	1,2,3,4,5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행사
26	1.5	수	졸업식	6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행사

[교육과정 조정기]

10.13(수) 4교시 / 10.14(목) ~ 15(금) 8교시 / 12.23(목) ~24(금) 8교시 /
12.27(월) ~ 1.4(화) 4교시 / 1.5(수) 3교시

4. 행사주간 운영 계획

꿈 학교			
	5.20(목)	5.21(금)	5.22(토)
1 교시	과학창의캠프 과학으로 꿈꿔요! ①대전과학관 ②과학부스+영화	삶에서 배우는 인성·인권 ①국립생태원 ②인성인권요리교실 +소감발표	토요일
2 교시			
3 교시			
4 교시			
점심 시간			
5 교시			
6 교시			
7 교시			
8 교시			

지성 학교					
	7.14(수)	7.15(목)		7.16(금)	
		1~3	4~6		
1 교시	코딩데이 소양탐구 메이커톤 (소양일대)	심폐 소생 술 (도서관)	장애 이해 교육 (과학실)	학급교육과정	
2 교시		장애 이해 교육 (과학실)	심폐 소생 술 (도서관)	학급교육과정	
3 교시				방학식	
4 교시					
점심 시간		급식	급식		
5 교시		코딩데이 소양탐구 메이커톤 (소양일대)	학교로 찾아오는 연극 (도담관)		
6 교시					
7 교시					
8 교시					

감성 학교					
	10.13(수)	10.14(목)		10.15(금)	
		1~2	3~6	1~2	3~6
1 교시	동양 한마음 체육 대회	독서캠프 감성 글방 ①책마을 해리(교장) ②책마을 해리(학교)	감성 여행 1 (경주 일대)	진로캠프 드림 터치 (산속등대)	감성 여행 2 (경주 일대)
2 교시					
3 교시					
4 교시					
점심 시간					
5 교시					
6 교시					
7 교시					
8 교시					

행복 학교			
	12.23(목)	12.24(금)	12.25(토)
1 교시	계절놀이 겨울아 같이 놀자 ①스케이트+영화 ②문화지구 누에	다(多) 어울마당 ①눈썰매+파티 ②다문화+영화	성탄절
2 교시			
3 교시			
4 교시			
점심 시간			
5 교시			
6 교시			
7 교시			
8 교시			

-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①안(현장학습) 혹은 ②안(교내체험학습)으로 선택적 운영함
- * 상기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하루 생활 모습

구 분	시 정	시간	월	화	수	목	금				
아 활 침 동	등교 ~ 08:20		운동장 2바퀴 걷기								
아침독서	08:20 ~ 08:50	30'	사제동행 아침 독서(1호차)								
1~2교시	09:00 ~ 10:20	80'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중간놀이 동아리활동	10:20 ~ 10:40	20'	독서동아리 . 중간놀이(틈새신체활동) . 스쿨팜								
3~4교시	10:40 ~ 12:00	80'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교과				
청소&점심	12:00 ~ 13:00	60'	12:00 - 3,4학년 / 12:05 - 1,2학년 / 12:10 - 5,6학년								
5교시	13:00 ~ 13:40	40'	돌봄 및 방과후 1-2	교과 3-6	돌봄 및 방과후 1	교과 3-6	교과	교과	돌봄 및 방과후 1-2	교과 3-6	
6교시	13:50 ~ 14:30	40'	돌봄 및 방과후 1-4	교과 5-6	돌봄 및 방과후 1-4	교과 5-6	방과후 1~6	돌봄 및 방과후 1-2	교과 3-6	돌봄 및 방과후 1-4	교과 5-6
7교시	14:40 ~ 15:20	40'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8교시	15:30 ~ 16:10	40'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돌봄 및 방과후	
하교	<월,화,목,금> 16:15(1호차) 16:35(2호차) <수> 14:35(1호차) 14:55(2호차)		16:10	16:10	14:40	16:10	16:10				
* 교직원 연수·협의			자율연수	자율연수	배움과 성장의 날	자율연수	자율연수				

6-1. 학년별 기준 시간표

<1학년> - 2학기는 화요일 5교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국어	국어	수학	통합	통합
2	수학	수학	통합	창체(안)	수학
3	통합	통합	국어	통합	국어
4	통합	통합	국어	통합	국어
5		(통합)	창체	창체(동)	

<2학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국어	국어	수학	통합	통합
2	국어	수학	통합	수학	통합
3	수학	통합	국어	창체	국어
4	통합	통합	국어	창체(동)	국어
5		창체	통합	통합	

<3학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영어(원)	과학	수학	도덕	미술
2	영어(원)	과학	과학	수학	미술
3	수학	체육	국어	음악	국어
4	사회	체육	국어	사회	국어
5	창체	국어	음악	사회	체육
6				창체(동)	

<4학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사회	체육	국어	미술	국어
2	사회	체육	국어	미술	국어
3	과학	수학	사회	창체(동)	수학
4	과학	수학	음악	음악	체육
5	영어(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6				도덕	

<5학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과학	체육	국어	창체(동)	국어
2	과학	체육	국어	음악	국어
3	영어(원)	국어	사회	미술	체육
4	영어(원)	수학	과학	미술	도덕
5	수학	사회	음악	영어	실과
6	수학	사회		창체	실과

<6학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영어(원)	체육	국어	도덕	국어
2	영어(원)	체육	국어	창체(동)	국어
3	수학	과학	수학	음악	미술
4	사회	과학	음악	사회	미술
5	실과	국어	과학	사회	창체
6	실과	영어		수학	체육

6-2. 교과전담 및 외부강사 활용 시간표

<교과전담> 전담수업(과학실)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과학5	과학3		미술4	미술3
2	과학5	과학3	과학3	미술4	미술3
3	과학4	과학6		미술5	미술6
4	과학4	과학6	과학5	미술5	미술6
5			과학6		과학4
6					

<외부강사> 국악(도서관), ICT(정보실), 체육, 뮤지컬, 무용(강당)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영어3,6	체육4-6	뮤지컬4-6	국악1,2 ICT5	무용1 뮤지컬4-6
2	영어3,6	체육4-6	뮤지컬4-6	국악5 ICT6	무용2 뮤지컬4-6
3	영어5	체육1-3	뮤지컬1-3	국악3,6 ICT4	무용5 뮤지컬1-3
4	영어5	체육1-3	뮤지컬1-3	국악4 ICT2	무용4 뮤지컬1-3
5	영어4			ICT1	무용3
6				ICT3	무용6

1. 기본 방향

- 가. 교과 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나.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다. 각 교과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노력하여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 라.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얻게 한다.
- 마.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힘쓴다.
- 바. 개별적인 학습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사.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 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아. 교과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본교의 교과 지도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운영한다.
-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교재, 각종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 차.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활동 중심으로 지도한다.
- 카.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각 학년에는는 교과별 교육내용, 교과 목표를 상세화 및 체계화하여 작성한다.
- 타. 교과를 재구성하여 학교 실태, 학습자의 특성, 지역 실태에 맞는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 파. 다양한 체험활동과 토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집단 협력 학습 등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14호)을 따름

2. 교육 중점

교과	교육 중점	교과역량
바른 생활	1) 가정, 학교, 사회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학습 습관을 형성한다. 2)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실천 기능을 익혀 초등학생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 지도한다. 3) 바른 생활과는 되돌아보기, 스스로 하기, 내면화하기, 관계 맺기, 습관화하기 등의 기초적인 실천 기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4) 바른 생활과는 통합교과 8개의 대주제(‘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로 선정하고, 활동 주제는 바른 생활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슬기로운 생활	1)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2)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탐구기능을 익힌다. 3) 슬기로운 생활과는 관찰하기, 무리 짓기, 조사하기, 예상하기, 관계망 그리기 등의 탐구기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4) 슬기로운 생활과는 통합교과 8개의 대주제(‘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로 선정하고, 활동 주제는 슬기로운 생활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즐거움 생활	1) 여러 가지 놀이와 표현 활동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알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한다. 2) 자신과 주변의 모습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표현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표현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4) 즐거운 생활과는 놀이하기, 표현하기, 감상하기 등의 기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5) 즐거운 생활과는 통합교과 8개의 대주제(‘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로 선정하고, 활동 주제는 즐거운 생활과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국어	1)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느낀다. 2) 생활 중심의 친숙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생활화한다. 3) 공동체·문화 중심의 확장된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교과의 기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대인관계능력 문화 향유 능력 자기 성찰·계발 능력 등
수학	1)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기능, 원리, 법칙을 이해한다. 2)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수학 학습에 관한 관심과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며,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교과	교육 중점	교과역량
국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사용 능력의 실재가 되는 글의 생산·수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글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2) 모든 학습활동은 인성교육과 국어사용 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국어과 인성 핵심역량 강화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매체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강화한다. 	비판적·창의적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도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지리·역사·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관련 문제의 해결 및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2)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3)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그 대처 방안을 생각한다. 	창의적 사력 비판적 사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능력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도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생활 예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제시와 함께 실제로 몸에 익히도록 하는 지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생활 예절과 덕목을 습득한다. 2)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소통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행동 능력과 습관을 기른다. 3)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성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자존감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수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본적인 기능과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한다. 2)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수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수학적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
과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 관련 언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학생 수준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탐구 활동 중심으로 학습한다. 3)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과학적 사력 탐구 능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실습, 조사, 토의, 노작 활동을 강화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3) 미래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생활 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체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활동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운동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도전의 의미와 특성을 알고, 도전 활동에 필요한 기본 기능과 관련 덕목을 익힌다. 3) 경쟁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운동 규칙, 기능 규범 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건강관리능력 신체 수련능력 경기 수행능력 신체표현능력
음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선택하고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한다. 2) 음악의 기초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3) 우리 도의 전래 동요, 민요, 판소리, 풍물놀이 등을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
미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2)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적 감수성 사회적 소통능력 창의융합능력
영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에 대한 흥미와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가진다. 2)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영어 학습을 통하여 외국어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VI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깊어져요.

1. 기본 방향

- 가.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2. 교육 중점

영역	교육 중점
자율활동	1)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초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급, 학년, 학교의 특성 및 지역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특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기른다.
동아리활동	1) 학생의 취미, 흥미, 적성, 요구,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 등에 알맞은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모든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2) 동아리 활동의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봉사활동	1)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생활과도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2) 지역사회 관계 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진로활동	1) 학생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2) 진로 적성 검사 및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특성을 알아보고 관련 진로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한다. 3) 학교 및 지역사회 인사, 지역사회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래에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학업과 직업에 관해 탐구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한생활	1)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알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 수칙을 지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2)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규칙과 행동 수칙을 익혀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안전한 생활을 실천한다.

3.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수 확보 현황

1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안전한 생활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1	62	8			22	98	15		4		4		16		137
2학기	5		9		12			10	36	15		1		4		14		70
계	10		10		20		13	134	30		5		8		30		207	

2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안전한 생활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4	1	4	8	4		7	33	0	15	4	0	4	0	17	0	73
2학기	5		9		12			10	36	0	12	1	0	4	0	17	0	70
계	14		14		24		17	69	27		5		8		34		143	

3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1		8			14	28		18	4		4				54
2학기	5		9		12			10	36		10	1		4				51
계	10		10		20		24	64	28		5		8					105

4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1		8			13	27		19	4		4				54
2학기	5		9		12			3	29		17	1		4				51
계	10		10		20		16	56	36		5		8					105

5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1		8			30	44		2	4	2	4	2			58
2학기	5		9		12			7	33		2	1	2	4	2			44
계	10		10		20		37	77	4		9		12					102

6 학년	학기	자 율 활 동								자율 활동 소계	동아리 활 동		봉사 활 동		진로 활 동		계	
		자치		적응		행사		창의적 특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1학기	5		1		8			18	32		12	4		4				52
2학기	5		9		12			10	36		9	1		4				50
계	10		10		20		28	68	21		5		8					102

4. 안전교육 운영 계획

1학기

순	날짜	요일	행사명	대상	시수	교육과정편성	안전영역
1	3.2	화	입학식	1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2	3.2	화	시업식	2,3,4,5,6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3	3.3	수	새학기적응활동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1)
4	3.12	금	다모임(임원선거)	전학년	2시간	1~2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2)
5	3.24	수	소방훈련(화재대피)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재난안전(1)
6	4.12	월	학생건강검사	2,3,5,6학년	1시간	4교시:체육(즐생)	생활안전(1)
7	4.28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1)
8	4.28	수	환경교육	전학년	2시간	2~3교시:과학(슬생)	생활안전(2)
9	4.28	수	학생소변검사	2,3,5,6학년	1시간	4교시:체육(즐생)	생활안전(1)
10	5.17	월	과학캠프	전학년	4시간	1~4교시:과학(슬생)	재난안전(2) 교통안전(2)
11	5.17	월		인성인권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12	5.18	화	전학년		4시간	1~4교시:도덕(바생)	생활안전(2) 교통안전(2)
13	5.18	화	전학년		4시간	5~8교시:사회(바생)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4)
14	5.26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1)
15	5.26	수	소방훈련(복합재난)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재난안전(1)
16	6.30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17	7.2	금	안전체험	2,5학년	6시간	1~6교시:체육(즐생)	재난안전(3) 교통안전(1)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2)
18	7.14	수	메이커톤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직업안전(4)
19	7.14	수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봉사)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4)
20	7.15	목	심폐소생	전학년	2시간	1~2교시:체육(즐생)	응급처치(2)
21	7.15	목	장애이해	전학년	2시간	3~4교시:도덕(바생)	생활안전(2)
22	7.15	목	학교연극	전학년	4시간	5~8교시:국어	생활안전(4)
23	7.16	금	여름방학식	전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학급별			인터넷중독예방 미디어리터러시	전학년	3시간	창체(동아리)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3)

2학기

순	날짜	요일	행사명	대상	시수	교육과정편성	비고
1	8.23	월	여름개학식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2	8.24	화	새학기적응활동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1)
3	9.15	수	소방훈련(지역특성)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재난안전(1)
4	9.29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1)
5	10.13	수	체육대회	전학년	3시간	1~3교시:체육(즐생)	생활안전(2) 응급처치(2)
6	10.13	수		전학년	1시간	4교시:창체(봉사)	
7	10.14	목	글방	1,2,3학년	4시간	1~4교시:국어	생활안전(4) 교통안전(2)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2)
8	10.14	목		1,2,3학년	4시간	5~8교시:미술(즐생)	
9	10.14	목	여행1	4,5,6학년	4시간	1~4교시:국어	생활안전(4) 교통안전(2)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2)
10	10.14	목		4,5,6학년	4시간	5~8교시:사회	
11	10.15	금	드림터치	1,2,3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생활안전(4) 교통안전(2) 직업안전(2)
12	10.15	금		1,2,3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13	10.15	금	여행2	4,5,6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진로)	생활안전(4) 교통안전(2) 직업안전(2)
14	10.15	금		4,5,6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15	10.27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1)
16	10.27	수	소방훈련(재난대응)교육	전학년	1시간	5교시:창체(자율)	재난안전(1)
17	11.24	수	다모임	전학년	1시간	1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18	12.23	목	겨울놀이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4) 교통안전(2)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2)
19	12.23	목		전학년	4시간	5~8교시:음악(즐생)	
20	12.24	금	어울마당	전학년	4시간	1~4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4) 교통안전(2)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2)
21	12.24	금		전학년	4시간	5~8교시:창체(자율)	
22	12.30	목	다모임(임원선거)	전학년	2시간	1~2교시:창체(자율)	생활안전(2)
23	1.5	수	종업식	1,2,3,4,5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24	1.5	수	졸업식	6학년	1시간	3교시:창체(자율)	교통안전(1)
학급별			인터넷중독예방 미디어리터러시	전학년	5시간	창체(동아리)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5)

가. 영역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나. 시간 : 연간 51시간 교육

다. 방법 : 학교행사 활동, 보건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내용 중 안전교육 관련 영역별 시간 배정

라. 안전교육 영역별 내용 및 배정시수

학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운영시수 51차시 이상
		12(10~15)		11(9~14)		8(7~10)		10(8~13)		6(5~8)		2(2~3)		2(2~3)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	교	10	10	4	6	4	6			2				2	1	45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4	30	7	15	5	9	7	5	4	3	8	4	2	2	115
2	교	12	10	5	6	6	6			5				2	1	53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6	30	8	15	7	9	7	5	7	3	8	4	2	2	123
3	교	12	10	4	6	4	6			2				2	1	47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6	30	7	15	5	9	7	5	4	3	8	4	2	2	117
4	교	10	10	4	6	4	6			2				2	1	45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4	30	7	15	5	9	7	5	4	3	8	4	2	2	115
5	교	12	10	5	6	6	6			5				2	1	53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6	30	8	15	7	9	7	5	7	3	8	4	2	2	123
6	교	12	10	4	6	4	6			2				2	1	47
	창	4	20	3	9	1	3	7	5	2	3	8	4		1	70
	계	16	30	7	15	5	9	7	5	4	3	8	4	2	2	117

5. 범교과 운영 계획

가. 성.보건교육 기준 시간

1) 목적

- 가) 보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 이해
- 나) 보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2) 방침

- 가) 보건교육은 담임 및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 나) 성교육 시수는 관련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그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 다) 관련 교과 단원에서 특정 성교육 주제에 대한 성교육 지도 요소가 다루어 질 경우 1차시분의 수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간 운영

학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연 2시간)	학생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연 6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 3~4시간)	성교육(성폭력예방 3차시포함) (연 15차시이상)
전	학년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학년	2	6	4	15

과목	지도	배정시간	주당시수	대상	요일(교시)	운영장소	비고
체육(즐생) 창체(자율)	순회 보건교사 김세영	9	일정에 따름	전학년	일정에 따름	도서실	4.6(화)~

*화: 2교시(1, 2, 3학년), 3교시(4, 5·6학년)

[1학기-3주] 04.06 / 06.01/ 06.29

[2학기-6주] 09.07 / 10.05 / 10.12 / 11.02 / 11.30 / 12.14

차시	날짜	영역	구분(학년)	학습주제
1	2021.4.6 (화)	일상생활과 건강	1,2,3학년	▶ 감염병 예방 할 수 있어요 (손 씻기)
			4,5,6학년	▶ 감염병 예방 할 수 있어요 (손 씻기)
2	2021.6.1 (화)	성과 건강	1,2,3학년	▶ 신체구조 이해, 위생관리, 임신의 원리
			4,5,6학년	▶ 신체구조 이해, 위생관리, 임신의 원리

3	2021.6.29 (화)	성과 건강	1,2,3학년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성폭력 예방 교육)
			4,5,6학년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성폭력 예방 교육)
4	2021.9.7 (화)	성과 건강	1,2,3학년	▶ 함께해요, 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4,5,6학년	▶ 함께해요, 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5	2021.10.5 (화)	정신건강	1,2,3학년	▶ 우울증, 자살 예방, 스트레스 관리
			4,5,6학년	▶ 우울증, 자살 예방, 스트레스 관리
6	2021.10.12 (화)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1,2,3학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4,5,6학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7	2021.11.2 (화)	약물 오남용	1,2,3학년	▶ 약물 오·남용
			4,5,6학년	▶ 약물 오·남용
8	2021.11.30 (화)	흡연예방	1,2,3학년	▶ 흡연 예방
			4,5,6학년	▶ 흡연 예방
9	2021.12.14 (화)	질병예방과 관리	1,2,3학년	▶ 생활습관병(비만 예방)
			4,5,6학년	▶ 생활습관병(비만 예방)

나. 영양 및 식생활 교육

1) 목적

- 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및 확산
- 나)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2) 방침

- 가) 담임교사를 활용하여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연 2회)한다.
- 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 지도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간 운영

- 1~4학년 : 3, 9월 첫째 주 수요일(창체 및 교과 활용)
- 5~6학년 : 실과 시간 활용

다. 정보통신활용(ICT) 및 소프트웨어(SW) 교육

1) 목적

- 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 나)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등 고등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 다) 정보통신 윤리 함양

2) 방침

- 가)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로 지도한다.
- 나) 과목별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정보통신활용(ICT) 및 소프트웨어(SW)교육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특히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정보통신활용(ICT) 및 소프트웨어(SW)교육에 대한 지도는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 라) 정보통신활용(ICT) 및 소프트웨어(SW)의 도구적인 특성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학습 내용을 학년 초에 먼저 지도한 후, 각 교과와 교수.학습에 활용한다.

3) 시간 운영

과목	지도	배정시간	주당시수	대상	요일(교시)	운영장소	비고
창체(동)	담임교사	학급별 계획	1	전학년	목(반별상이)	컴퓨터실	

*1교시(5학년), 2교시(6학년), 3교시(4학년), 4교시(2학년), 5교시(1학년), 6교시(3학년)

라. 다문화 교육

1) 목적

- 가)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함양
- 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 정치 등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

2) 방침

- 가) 다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에 초점을 둔다.
- 나) 다문화 이해 교육은 관련 교과를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해 교육 강사 또는 콘텐츠 등 활용하도록 한다.

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환경을 이해하고, 다문화 교육 기반으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자질 함양을 위한 원격연수 이수를 권장하도록 한다.

3) 다꿈 교육 주간 운영

가) 시기 : 5.17.(월)~21.(금)

나) 대상 : 전 학년

다) 영역 : 교과 연계

라) 내용 : 문화 다양성 및 세계시민 교육

마) 방법 : 학년별 관련 교과 재구성 지도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 활동

마. 독도 교육

1) 목적

독도 교육 주간 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험중심의 독도 교육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독도 주권 수호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2) 방침

가) 4월 1주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선정하여 1시간 이상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주제 중심의 독도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다)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을 실시한다.

- (활동 예시) 독도 수호 관련 백일장, 그림, 포스터, 웅변대회, 독도 골든벨 대회, 독도 모형 설명 대회, 독도 퍼즐 맞추기 대회, 독도 교육 영상물 시청 및 감상문 쓰기, 독도 교육 체험관 참관 등

바. 한자 교육

1) 목적

가) 한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휘력 확장을 통해 국어 독해능력 향상

나) 한자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2) 방침

가) 한자 교육 담당은 담임교사가 실시하여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나) 사회(통합)과 소단원 도입 시 낱말 풀이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되, 담임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한자 교육을 전개한다.

사. 꿈 키움 DAY

1) 목적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 및 진로 탐색과 개발의 기회 제공

2) 방침

가) 다모임과 행사주간 운영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기주도적 진로개척능력을 신장시킨다.

(꿈 학교, 지성학교, 감성학교, 행복학교)

나) 가방 없이 자유로운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주제를 스스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시간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라) 자율동아리 활동과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다질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는 성장과 발달을 도와줘요.

1. 평가 목적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통해 참학력을 신장시키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학력이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학력관으로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2. 평가 방침

- 가. 학습 결과로 서열을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시행한다.
- 나. 교육 활동이 속에서 수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며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를 시행한다.
- 다.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학급별로 유형, 시기,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평가를 시행하며 교과별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교사별 다양한 평가로 전환한다.
- 라. 학습활동, 학습 태도, 정의적 측면의 균형 있는 평가를 시행한다.
- 마. 학급 교육과정편성 시 평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시기, 방법, 횟수 등 교사별 다양한 평가를 시행한다.
- 바. 수행평가 방법 : 지필 평가, 서술형·논술형평가, 관찰평가, 토론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협력 활동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평가
- 사.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영역별 참여도, 협력성, 관찰을 통한 평가

3. 평가 계획 및 결과 안내

- 가.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학급 교육과정편성 시 평가 결과의 알림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한다.
- 다. 학생의 참된 학력을 중시하는 평가와 통지 방법 개선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제고한다.
- 라. 평가 계획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1) 학년별 평가 계획을 학기 초에 안내(학교 알리미,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 등)
 - 2) 학기 중 안내: 학생의 학교 적응 상황, 생활 태도, 발달 정도, 학습상황을 포트폴리오와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 3) 학년말 안내: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기술하여 생활통지표로 안내

IX

방과후학교로 채워요.

1. 운영 목적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취약계층 지원 및 돌봄 기능 정착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2. 운영 방침

- 가. 교과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여 학생의 학습 피로를 높이지 않는다.
- 나. 방과후 강좌 수강에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시 학습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함)
- 다. 강사모집 및 특기.적성 교육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라. 교육 활동 공개 및 수업 참관 등을 통해 교육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운영 방법 및 시간

순	활동부서	반편성(학년)	대상	장소	활동 시간		강사		수강료
					요일	주당시간	지원	외부	
1	돌봄교실	무학년제	1-4년	돌봄교실	월-금	20		○	교육공무직
2	음악줄넘기	1-2/3-6	1-6 선택	도담관	금	4		○	방과후 예산
3	중국어	1-2/3-4/5-6	1-6년	과학실	화,목	4	○		완주군지원
4	미술	1-2/3-6	1-6 선택	과학실	금	4		○	방과후예산
5	바이올린	1-2/3-4/5-6	1-6 선택	2학년교실	화, 목	5		○	방과후예산
6	영어	1-2/3-4/5-6	1-2선택 3-6년	도서실	월,화,목	8		○	방과후예산
7	창의과학 (코딩)	3/4/5-6	3-4 선택 5-6 선택	컴퓨터실	월,금	6		○	방과후예산
8	태권도	1-3/4-6	1-6년	도담관	월,수	3	○		완주체육회 방과후예산

구분	월	화	수	목	금
5 교시 13:00~13:40	1-2 돌봄	1 돌봄			1-2 미술/음줄
6 교시 13:50~14:30	1-3 태권도 4 창의과학	1-2 영어/돌봄 3-4 중국어	전교생 태권도	1-2 바이올린/중국어	1-2 미술/음줄 3-4 창의과학/돌봄
7 교시 14:40~15:20	1-2 영어/돌봄 3 창의과학 4-6 태권도	1-2 돌봄 3-4 영어/바이올린 5-6 중국어		1-2 돌봄 3-4 영어 5-6 중국어/바이올린	1-2 돌봄 3-4 미술/음줄 5-6 미술/창과/음줄
8 교시 15:30~16:10	1-2 돌봄 3-4 창의과학 5-6 영어	1-2 중국어 3-4 돌봄/바이올린 5-6 영어		1-2 돌봄 3-4 중국어 5-6 영어/바이올린	1-2 돌봄 3-4 미술/음줄 5-6 미술/창과/음줄



아이들과 교육이 중심이에요.



꿈을 키우는 학교: 자기주도적 진로개척능력 신장

가. 내 꿈 찾기 활동을 통해 꿈을 가꾸어요.

- 표준화 검사를 통해 자기이해하기
-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이력관리하기
- 다양한 활동으로 진로정보탐색하기

■ 표준화 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하기

- 다양한 표준화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 학습저해요인 진단 및 학교생활 적응도 결과 상담
 -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및 결과 상담

■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이력관리하기

- 배움과 성장기록 포트폴리오 누가 이력관리

■ 다양한 활동으로 진로정보탐색하기

- 사제동행 아침독서활동으로 진로정보탐색(주5회)
- 정보탐색활동을 통한 꿈 키우기: 매주 목요일, 창체(동아리활동)연계

나. 꿈 키움 Day로 꿈을 찾아요.

- 활동중심 진로체험학습하기
- 학생자치회 다모임을 통한 다양한 꿈 키움 활동하기

■ 활동중심 진로체험학습하기

- 맞춤형 활동중심 진로체험학습
 - 산속등대 및 완주군 일대 진로체험활동
 - 과학으로 꿈꿔요, 과학캠프 및 영화로 세상 보기, 메이커톤 등 체험활동

■ 학생자치회 다모임을 통한 다양한 꿈 키움 활동하기

- 학생자치회 다모임을 통한 학교행사 기획하기
 - 학생중심의 꿈 학교, 지성학교, 감성학교, 행복학교(행사운영 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결과 나눔 활동
 - 자율동아리 활동 및 발표를 통한 꿈 탐색 및 다짐 기회 제공

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꿈을 다져요.

- 21C 학습자역량 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SW)교육 활성화하기
-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플래너 쓰기

■ 21C 학습자역량 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SW)교육 활성화하기

-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활용하여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21C 학습자역량 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목요일, 주1회)
- 방과후학교 창의과학부 개설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 활동(주2회)

■ 학년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플래너 쓰기

- 학생 발달상황을 점검하고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진단활동
 - 관찰을 통한 진단활동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또는 학교 자체 진단검사지 활용 진단검사
 -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플래너 작성
 - 1학년: 생각 노트
 - 2학년: 알림장
 - 3학년: 다섯 줄 하루 정리 공책
 - 4학년: 한 줄 생각 공책
 - 5학년: 학습플래너
 - 6학년: 학습플래너
- ※ 담임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주제가 변경될 수 있음



가. 참학력을 높이는 기본학습을 다져요.

- 참학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하기
- 참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하기
- 수업나눔과 컨설팅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하기

■ 참학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하기

- 프로젝트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실험·실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
- 학년(급)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로 학년별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참학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하기

- 프로젝트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실험·실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성화
- 학년(급)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로 학년별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참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하기

- 수업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 실시
 -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결과 누가 관리(포트폴리오)
- 학부모 상담 및 공개수업 주간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시 및 정기적으로 연 2회 안내
(수시: 포트폴리오, 학기말: 생활통지표)

■ 수업나눔과 컨설팅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하기

- 배움과 성장의 날 : 라온하제 동아리 운영
 - 매주 수요일 7-8교시, 교원의 토론 및 공동연구 활동
- 소양 혁신학교벨트 공동연수 운영(월 1회)
- 전북 혁신교육 양적종단연구 표집학교 연구협력
- 자기장학, 동료장학, 컨설팅 장학 활성화(수시)
-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 실시
 - 내 자녀 학습관찰의 날(연 2회)

나.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실시해요.

- 소인수학급 특성을 살린 교과학습 전개하기
-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하기
-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하기

■ 소인수학급 특성을 살린 교과학습 전개하기

- 소인수학습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별화 교육 실시

■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하기

- 기초·기본학력 담임 책임제 운영
- 방과후 보충학습을 통한 학습더딤 학생 개별지도

■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하기

- 학습더딤 학생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주2회)

다. 외국어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수업하기
-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하기

■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수업하기

- 원어민 영어 협력수업(Co-teaching) 운영
 - 3~6학년(매주 월요일), 3,6학년/5학년 2차시, 4학년 1차시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확대 운영
- 방과후학교 영어 및 중국어부 운영
 - 영어(주3회), 중국어(주2회)

■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하기

- 방학 중 외국어(영어, 중국어)캠프 운영



감성이 풍부한 학교: 융합형 체험중심 창의·인성·감성교육 활동

가.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활동 중심교육을 실시해요.

- 꿈, 지성, 감성, 행복학교 운영하기
- 완주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기
-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만들기

■ 꿈, 지성, 감성, 행복학교 운영하기

-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꿈, 지성, 감성, 행복학교 운영(행사주간 운영)
 - 꿈 학교(5월17일~5월18일): 과학으로 꿈꿔요, 인성·인권 캠프
 - 지성학교(7월14일~15일): 소양탐구 메이커톤, 심폐소생술, 장애이해교육, 학교로 찾아오는 연극
 - 감성학교(10월13일~15일): 동양 한마음 체육대회, 독서캠프 감성글방, 진로캠프 드림터치, 감성여행(테마식현장체험학습)
 - 행복학교(12월23일~24일): 계절놀이(스케이트), 多어울마당(눈썰매, 다문화)
- ※ 상기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완주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기

- 완주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 뮤지컬(전학년: 4차시*2회*4주)
 - 놀이로 즐기는 수업(동양 한마음 체육대회)
 -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공연(지성학교 연계)

■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만들기

-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 놀이체육: 뉴스포츠(1~6학년: 2차시*2반*18주 /72차시)

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감성을 높여요.

-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하기
- 방과후 문화예술 발표회 운영하기
- 활동중심 예술교육, 문화체험교육 활동하기

■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하기

-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과교육(국악, 무용) 운영

■ 방과후 문화예술 발표회 운영하기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Day 운영(11월 5일 예정)
 - 통기타, 바이올린, 미술 등 선택 운영

■ 활동중심 예술교육, 문화체험교육 활동하기

- 학급별 주제가 있는 다양한 예술, 문화체험 프로젝트 학습 운영
- 꿈, 지성, 감성, 행복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다. 건강증진 및 고운 심성을 함양해요.

- 놀이 체육 활동 및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하기
- 악기 지원사업과 연계한 음악교육 활성화하기

■ 놀이 체육 활동 및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하기

- 뉴스포츠 도구를 활용한 놀이 체육 활동 및 방송 댄스 배움 활동
- 동양 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 악기 지원사업과 연계한 음악교육 활성화하기

- 악기 지원사업과 연계한 음악교육 활성화
 - 1인 1악기 기능 갖추기
- 동요 10곡 부르기
 - 학년별로 선정된 동요 월 1곡 부르기

[부록1] 원격수업 교육활동을 준비해요.



이 운영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2항 및 제24조 3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2020.12.31.)」 「2021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¹⁾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I. 개요

가.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나. 배경

- 2020학년도 이후 온·오프라인 교육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수업 등 새로운 교육모델의 중요성 부각
- 원격수업 전환, 대면·원격수업 병행 등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방안 마련

다. 원격수업 정의

-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

라. 준비사항

- 새학년 시작 전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양초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교내 확진자 발생, 미래교육 대비(온라인 수업도구 활용),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등
- ** 온라인 학급방 개설, 학급 소통방(클래스팅, SNS 그룹대화방 등), 원격수업 역량강화(대면·비대면 연수, 관련도서 등), 학생 피드백, 학부모와 소통

1)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교육과 부서자료실 489번 탑재

II. 원격 수업 편성·운영

가. 운영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원격수업을 운영하려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② 원격수업의 운영 및 인정기준, 평가관리
- ③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및 질 관리
- ④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⑤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향상 방안
- ⑥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 (의견 수렴) 계획 수립단계에서 교원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양초등학교 원격수업 계획* 및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 내용을 주별(또는 월별)로 편성**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 원격수업계획(출결, 평가,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 포함)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 원격수업 주간학습 안내 등

나.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

-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출결·평가·학생부 관리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기 구성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 위원회를 통해 원격수업이 교내 모든 교원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
 - * 교무(출결), 연구(교수·학습), 정보(원격수업 연수, 기기 보급, 온라인 학습방 개설 등), 평가(학생평가, 생활기록부 기록), 담임(혼합수업, 피드백 방안 발굴 공유 등), 기초학력(더딤학생 지도), 특수·다문화·교육복지(온라인 사각지대 학생 대책) 등

다. 원격수업 운영

- (원칙) 대면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 혼합수업으로 학생 배움중심 교수·학습 지속 - 수업 시간에 일정한 공간(교실, 특별실)에서 원격수업 운영

-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학생, 학부모),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노력
-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피드백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지도
- (수업인정)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년별·교과별 총 수업시간 전부를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수업량) 원격수업 한차시 기준 시량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40분을 원칙으로 함
-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블러타임제 등 탄력적으로 원격수업 시간 운영
 - ※ 학생의 과제학습 시간 확보, 교사의 충실한 피드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운영(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 (수업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 (수업방식) 모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실시간 쌍방향, 쌍방향+콘텐츠 활용, 쌍방향+과제중심 수업 등의 혼합수업은 물론 콘텐츠 활용+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포함
- 개선된 원격수업 운영환경(공공LMS 플랫폼* 개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격수업에 활용
 - * 공공LMS 플랫폼 : 전북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대면·원격수업 간 혼합 수업**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운영

구분	세부 모형 예시
1. 원격수업 간 혼합	• 콘텐츠 활용수업(예습)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 콘텐츠 활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2. 원격수업+대면수업간 혼합	• 원격수업(예습학습)+대면수업(피드백, 프로젝트학습 등) 모형
	• 대면수업(핵심개념학습)+원격수업(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 공공 LMS 플랫폼(전북e학습터 등), 또는 민간 서비스 활용 (Zoom 구글 Meet, MS팀즈 등)
- 실시간 화상수업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차시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학습과제 제공

- (실시간 출석 확인)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

【수업 참여 확인】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유선전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 (내용) 원격수업 준비도, 건강상태,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전달사항(알림장) 등을 주제로 소통
-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 내용을 안내하고 특이사항 파악

- (피드백 강화) 원격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성취도 달성을 위해 학생 개인별 다양한 피드백* 제공

-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만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학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업 중 피드백(상시 소통) 강화

* 학습 수준 진단, 수업 참여도·태도, 학습 성취 정도, 응원·격려, 건강상태 확인 등

- 실시간 피드백: 실시간 화상시스템 활용, 퀴즈형 온라인 수업도구 활용 등

- 과제형 피드백: 제출한 학습과제물을 보고 미성취 부분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온라인에 축적된 학생 과제물을 통한 학습 성장 과정 피드백 등

※ 학교교육과 부서자료실 488번 - 원격수업 맞춤형 피드백 및 실시간 조종례 자료 활용

- (저작권)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에 ‘수업 목적임’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

* [저작권 경고 문구 (예시)]

저작권법(제25조3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초등 저학년 원격수업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함
- 원격수업 운영 시 학습발달단계, 학습 도움 필요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

-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활성화(학생, 학부모),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으로 학생의 성장 조력
-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기기를 대여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여건을 조성하고, 학습꾸러미* 제공
 -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 기본 학습 준비물(색연필 등), 권장도서, 기본 놀잇감, 학부모 안내 자료 등
 - ※ 2020년 전북교육청이 개발한 ‘배움꾸러미’ 학교교육과 부서자료실 활용

마. 원격수업 평가

- (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
 -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 (원격수업 수행평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동영상 활용
- (기록)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하며,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다양한 관찰 방안을 확보
 - ※ 구체적인 출결·평가·기록사항은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름

Ⅲ.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공정성·형평성)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콘텐츠 확충
 - *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 * 기본교육과정 교과 단원별 수업자료 제작·탑재, EBS 강의자료 점역·자막 제공,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 등
- (대체·보충학습 제공)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IV. 원격수업 질 관리

- (질 관리)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 방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위해 노력
- (역량강화 연수)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콘텐츠 활용 역량 등을 위해 교원 연수(연구회) 및 컨설팅 지원
- (학생·학부모 소통) 학습, 생활지도·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확대
 - 학교(급)의 원격수업 과정 안내,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노력
 -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그룹대화방, 상담, 학부모 안내장 등 활용

V. 기타

- (대면-원격수업 전환 개념도) 등교수업 시 학교에 보급된 노트북 또는 학생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가정하에 원격수업 참여방법* 및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힌 후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 기기 활용법, 플랫폼(e학습터 등) 활용법,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등
 - **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교내 확진자 발생,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 (미래교육 대비) 미래교육(수업)을 대비하여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 적용을 위해 노력
- (원격수업 흐름)

원격수업관리 위원회 개최	원격수업 계획 수립	원격수업 운영 및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플랫폼, 온라인 학급방, 학급 소통방 ■ 원격수업 인정기준, 출석관리, 평가관리, 질관리 ■ 원격수업 향상 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 역량 강화 연수 (대면·비대면 연수, 나눔, 관련 도서 등) -원격수업 나눔(동료, 학부모 온라인 초청 등) ■ 정보보호, 저작권, 디지털 범죄 예방 등 교육 ■ 담당자별 역할 나눔 ■ 원격수업 운영(원격수업 흐름, 학생 피드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학급 세우기(교육과정 세움 지원자료 72쪽 참고) ■ 원격수업 운영(수업운영, 주간학습 안내) ■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 원격수업 나눔 ■ 원격수업 운영 자기 성찰, 환류 등

[부록2] 함께 만든 인권생활규정, 스스로 지켜요.



동양초등학교 인권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동양초등학교 인권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을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지역교육청)나 완주군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신고센터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2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다목적교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체육교과 활동 학습 내용에 따라 지정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모임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일주일 이내로 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생리결(월1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 본인(20일)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 자매(1일)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2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선후배, 동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4.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자치활동

제27조【회원】전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전교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전교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제29조【협의·지원 사항】전교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학생 교·내외 생활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전교어린이회 임원】전교어린이회 임원은 전교어린이회장 1인, 부회장 2인(5학년 1명, 6학년 1명)으로 하고, 서기 1인은 전교부회장과 겸직할 수 있다.

제32조【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등을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4.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제33조【직무 및 선출】

- ①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주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계획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3 장 생활교육위원회

제34조【학교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육과정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35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6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7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사생활보호】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4. 일기는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제39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1조【체벌금지】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2조【교사의 권한】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및 시상

제1절 징 계

제44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6~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6조【징계의 방법】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

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7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8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0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1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52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일기상, 독서상, 영어회화상 등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친절상 등
3. 근면부문 - 6년개근상, 6년정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3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4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55조【모범부문】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⑤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56조【근면부문】

- ① 6년개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6년정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9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7조【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선행상】각 학급에서는 수시로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 위원회로 대신하며, 학생위원은 전교어린이회 임원 4명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교생활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98. 3.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4. 2.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6. 3.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록3] 학교 규칙을 살펴봐요.



동양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제정	1998.03.01.
제 1 차	개정	2003.01.04.
제 2 차	개정	2004.06.05.
제 3 차	개정	2007.03.21.
제 4 차	개정	2012.02.17.
제 5 차	개정	2013.02.18.
제 6 차	전면개정	2020.04.08.
제 7 차	개정	2021.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동양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동양초등학교라 칭한다.(이하 본교 또는 우리 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9에 소재한다.

제4조(근거)

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학기제의 조정이 필요한 때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1학기과 2학기의 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3. 개교기념일 : 11월 20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6. 학년말 방학
7. 토요일휴업일
8. 기타 연간 수업일수가 확보된 학교교육과정 상 명시된 휴업일

② 제6조 ①항 제4호, 5호, 제6호의 휴업 기간은 제11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6조 ①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학교장은 별도의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이수 범위 및 교육목적 수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교육감이 통보하는 당해 연도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교육감(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체험학습·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1조(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시수 인정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2.)
- ②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학교 간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외체험학습(연30일(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4주), 단체 교환학습(2주 이내)**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단, 국외 여행 시 보호자와 함께 한 증빙서류(항공권, 출입국증명서 등)를 학교에 제출한다.(개

정 2021. 2.)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⑤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시행에 있어 학교규칙에서 적용 범위가 어려운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에 준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1. 2.)
- ⑦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예외인정 가능) (신설 2021. 2.)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평가항목,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에 관계된 평가는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제13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부의 기입요령과 통계처리는 NEIS 출석부 처리 운영방침에 따른다.
 - 1. 결석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결석한 자'의 학적은 정원 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4)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은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가정방문, 안전확인, 내교 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대신한다.

다. 기타 결석: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출석 사항 평가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6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단, 지각(조퇴, 결과) 2회는 결석 1회와 같이 평가한다.

1.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제12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간주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예규 제44호를 근거로 함]

가. 결혼: 형제, 자매(1일)

나. 입양: 본인(20일)

다.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외)조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7.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월1일에 한함)

③ 위와 같은 사유의 결석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관리는 그 학생의 직전 평가 성적을 참조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5 장 입학·전학·휴학·취학 유예와 면제

제15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③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본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여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자

제16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5세가 된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기입학을 신청하여 1년 조기입

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여 학교장이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②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하고,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한다.
- ③ 입학기일 이후 3일~입학기일 이후 9일까지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시에

는 교직원,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한다.
3.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4.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5.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한다.

제19조(전·입학)

-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1조(취학·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면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학교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면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③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제1항 제1-3호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⑤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6 장 특수교육

제24조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 (통합교육)

- ①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경우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한다.

제26조 (개별화교육지원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둔다.

제27조 (차별의 금지)

-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 ②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2학년부터 4학년, 3학년부터 5학년,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3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

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㉓, ㉔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㉓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8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

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8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생의 포상·훈육 및 징계

제36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37조 (시상 및 장학금 지급)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기능이 뛰어난 아동에게 별도의 시상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8조 (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활동
- ② 특별 교육 이수
 - 1. 징계처분을 할 때에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

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9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41조(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학생자치 활동은 당해 연도 동양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동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제51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3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6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분쟁조정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8조(분쟁조정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63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학칙제정】 이 학교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3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4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5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6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7차개정】 이 학교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4]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살펴봐요.



동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1.18)와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동양초등학교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2조【기본 방침】

-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의 전산처리 및 관리와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을 통한 서열화의 목적이 아닌 참학력 신장에 중점을 둔다.
-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④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 및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구체적인 확인 일정, 확인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확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⑧ 이 지침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교과 평가 계획(영역·방법·기준 등)
3.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누가기록 방법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평가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내용 및 방법, 누가기록 방법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정정 등
7.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8. 초등 성장평가 운영 및 통지
9. 그 밖에 학업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는 학교의 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④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제반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6조【운영】

-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학기 초 및 심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 2.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④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관리

제7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①교과학습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 ②교과학습 평가 계획은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협의회 등에서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승인한다.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학급의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는 교과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④ 교과학습 평가는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며, 관찰평가, 구술평가, 선택형 평가,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학습활동 성취정도, 수행평가 결과, 학습활동 수행상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한다.
- ⑥ 평가 도구로 사용한 학생 평가 결과물과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⑦ 평가 계획과 결과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공개 및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과 횟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⑨ 학교의 장은 교과학습 평가 운영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할 때 전출 시점까지의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전입교에 송부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에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학적 변동 일까지의 성적 전산자료를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결과 활용】학교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한다.

1.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 제공
2.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후속지도 자료
3.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
4. NEIS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5. 6학년은 성장평가의 성취수준(상, 중, 하) 결과를 환산하여 졸업사정에 반영한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관리

제9조【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과,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초등학교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하되, 진로희망분야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의 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을 입력한다.
- ⑦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 2학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는 태도 및 기능을 포함하여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형성 정도

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5장 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 등

제11조【학적 변동자의 성적처리】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나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1.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재취학, 전·편입학 학생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4.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제12조【그 밖의 사항】학교의 장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1.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록5] 교육과정 운영을 돌아봐요.



1. 방법

- 가.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나. 학기별로 실시되는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협의 및 평가
- 다. 학기별로 실시되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평가

2. 설문 내용(예시)

가. 교사용

I. 수업활동 부분

1. 다음 내용은 수업활동 영역에서 <미래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수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학생들에게 평소 더불어 행복한 꿈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우관계는 협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판단에 앞서 학생들에게 묻고 감정을 읽어 적절하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오개념과 난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은 수업활동 영역에서 <수업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수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학생의 진로 설계 및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해결하는 수업의 장면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수업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과 서로 협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수업을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수업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내용은 수업활동 영역에서 <교사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수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같은 연수를 함께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학교에는 함께 책 읽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자기성장을 위한 교사동아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수업공개 후 학생 중심으로 수업협의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교육과정 운영 평가 협의회가 분기별로 열린다.	①	②	③	④	⑤

Ⅱ . 교 육 과 정 운 영

4. 다음 내용은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교육과정 편성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지역사회와 물적·인적 기반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내용은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교육과정은 실제적인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교육과정은 이론이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체험 중심의 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인권 존중 평의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서술식, 논술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Ⅲ. 학 교 문 화

6. 다음 내용은 학교문화 영역에서 <민주적 협의 문화>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문화와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자유로운 토론,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는 학년협의회 또는 교과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교육과정에 교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와 상호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학교 운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내용은 학교문화 영역에서 <수업지원체제 구축>이 얼마나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문화와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우리 학교는 업무효율화(관행개선, 공문서감축, 인력보강)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학교는 불필요한 업무나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는 업무보다 수업과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 우리 학교는 창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교장·교감선생님께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학교 시스템

8. 다음 내용은 학교경영시스템 영역에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경영시스템과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우리 학교는 행사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과 학생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와 학부모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우리 학교는 학생.학부모 회의장소가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 내용은 학교경영시스템 영역에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가 얼마나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경영시스템과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학교 운영 철학과 비전을 학생.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학부모와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교육 만족도

10. 다음 내용은 교육만족도 영역에서 <교사직무 만족도>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 전체를 비교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내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아이들과 상호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동료 교사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 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⑨ 우리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은 나의 건의나 불만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우리 학교의 예산은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학생용

I . 수업 (학 습) 활 동

1. 다음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학습)활동 영역에서 <미래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수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① 나는 학습(수업)시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선생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꾸준히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③ 선생님은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우리들이 서로 잘 듣고 공감하는 것을 강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평소 더불어 행복한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우리는 수업시간에 협력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⑦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우리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⑧ 선생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⑨ 선생님은 학습(수업)에서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학습)활동 영역에서 <수업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수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는 진로.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선생님은 우리들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해결하는 수업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활동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⑤ 수업은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수업시간에 우리들 개개인(한 명 한 명)은 선생님께 관심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Ⅱ . 교 육 만 족 도

3. 다음은 우리 친구가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고민을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수업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우리 학교는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에 따뜻한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학교 친구들과 협동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우리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⑩ 우리 학교는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습시설(체육관, 도서관, 영어 학습실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학부모용

I . 수업 (학 습) 활 동

1. 다음 내용은 귀 자녀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학습)활동 영역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귀 자녀의 학교 교육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① 학습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③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선생님은 친구들끼리 서로 잘 듣고 공감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선생님은 평소 더불어 행복한 꿈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선생님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협력적인 교우관계를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선생님은 학생들의 감정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⑨ 선생님은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은 귀 자녀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학습)활동 영역에서 <수업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귀 자녀 의 학교 교육(수업)활동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교수업은 학생의 진로.적성 계발을 위해 다양하게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아이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해결하는 수업의 장면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③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선생님의 수업은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학교문화 및 학교시스템

3. 다음 내용은 귀 자녀의 학교문화 영역에서 <민주적 협의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귀 자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학부모회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학부모회에 적극 참여하며 상호간에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 과정에서 토론.협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와 상호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우리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협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내용은 귀 자녀의 학교경영시스템 영역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귀 자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 학교는 학교 행사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 참여가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② 우리 학교는 민주적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우리 학교는 학부모회와 학부모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우리 학교는 학생.학부모 회의장소가 있어 잘 활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Ⅲ . 교 육 만 족 도

5. 다음은 귀 자녀가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③ 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④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문화는 따뜻하고 평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내 자녀는 학교 친구들과 협동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내 자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내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학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내 자녀 학교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습시설 (체육관, 도서관, 영어 학습실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1] 202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교육활동 시수



- ※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교과 학습주제별 시수임.
-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제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교과+창체, 창체+창체 간에 적극적으로 통합 지도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권장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60쪽)
- ※ 각 영역 일부 차시 원격수업 운영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따라 종합적인 협의 후 판단하여야 하며, 각 영역 중 실습과 체험이 필수인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시를 원격수업으로만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
- ※ 다음 표 안의 붉은색 시수는 2021학년도에 한시적으로 감축한 시수이며, 권장과 의무가 구분됨.

담당 부서	영역	교육과정 반영시수	원격수업 가능여부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정책 공보관	안전 교육	연 33시간 (정책공보관 - 782, 2021.1.2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편성 ·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연중 지속적인 지도 가능하도록 모든 영역을 고르게 편성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예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영·초·중·고 소방훈련·교육 초~2학년 안전생활 (총64차시) 2020학년도 감축한 시수는 안전교육과 통합하여 실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영역</th> <th colspan="2">시수</th> <th rowspan="2">세부내용</th> </tr> <tr> <th>초</th> <th>중·고</th> </tr> </thead> <tbody> <tr> <td>생활안전교육</td> <td>10</td> <td>8</td> <td>시설 안전, 실내활동,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 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td> </tr> <tr> <td>교통안전교육</td> <td>9</td> <td>8</td> <td>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td> </tr> <tr> <td>폭력예방 및 대응교육</td> <td>3</td> <td>5</td> <td>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td> </tr> <tr> <td>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td> <td>5</td> <td>5</td> <td>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보호 등 (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td> </tr> <tr> <td>재난안전교육</td> <td>5</td> <td>5</td> <td>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td> </tr> <tr> <td>직업안전교육</td> <td>0</td> <td>1</td> <td>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td> </tr> <tr> <td>응급처치교육</td> <td>1</td> <td>1</td> <td>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td> </tr> </tbody> </table>		영역	시수		세부내용	초	중·고	생활안전교육	10	8	시설 안전, 실내활동,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 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	교통안전교육	9	8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폭력예방 및 대응교육	3	5	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5	5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보호 등 (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	재난안전교육	5	5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교육	0	1	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	응급처치교육	1	1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영역			시수			세부내용																													
						초	중·고																																
				생활안전교육		10	8	시설 안전, 실내활동,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 활동, 안전, 식생활 안전, 실험실습 안전 등																															
				교통안전교육		9	8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폭력예방 및 대응교육		3	5	학교폭력, 언어·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유괴 및 미아 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5	5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보보호 등 (인터넷 중독·안전교육 통합운영)																															
재난안전교육	5	5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직업안전교육	0	1	일터 안전, 직업병의 진단 및 예방, 작업장 안전수칙 등																																				
응급처치교육	1	1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교육 혁신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 권 교육 포함)	학기당 1회 이상 (초·중·고) 연2시간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2회 이상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 실시 · 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인권 교육																																		
인성 건강과	수영 교육	초3~4년 의무 (연 10시간)	× 실습 교육 (이론 4시간은 원격수업 가능)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17.7.26.]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 [2017.8.] · 수영교육편성(연간 총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 수영교육(실기6+이론4) · 체육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시수 반영	안전 교육																																		

담당 부서	영역	교육과정 반영시수	원격수업 가능여부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인성 건강과	보건 교육	초·중·고 최소 1개 학년 16시간 (1단위) 이상	○	<p>「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誤用) 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p>[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권장 	안전 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 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연14시간	○	<p>「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p> <p>[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안전 교육 보건 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초등 (연 2시간) 중등 (연 1시간)	○	<p>「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p> <p>[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p> <p><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p>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초5년 이하 (1개 학년 1시간 이상) 초6~고등학교 (1개학년이상 연2시간이상)	× 실습 교육	<p>「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p> <p>[교육부 학교정책과-11273 (2020.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교육에 반영하여 교육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초 5년 이하 1개 학년(이론 교육 의무, 실습은 권장) 초 6년(이론+실습), 중·고(이론+실습) 	안전 교육 보건 교육
	식품 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안전 교육 통합운영 (초·중·고)	○	<p>「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p> <p>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 교육
민주	학생	학년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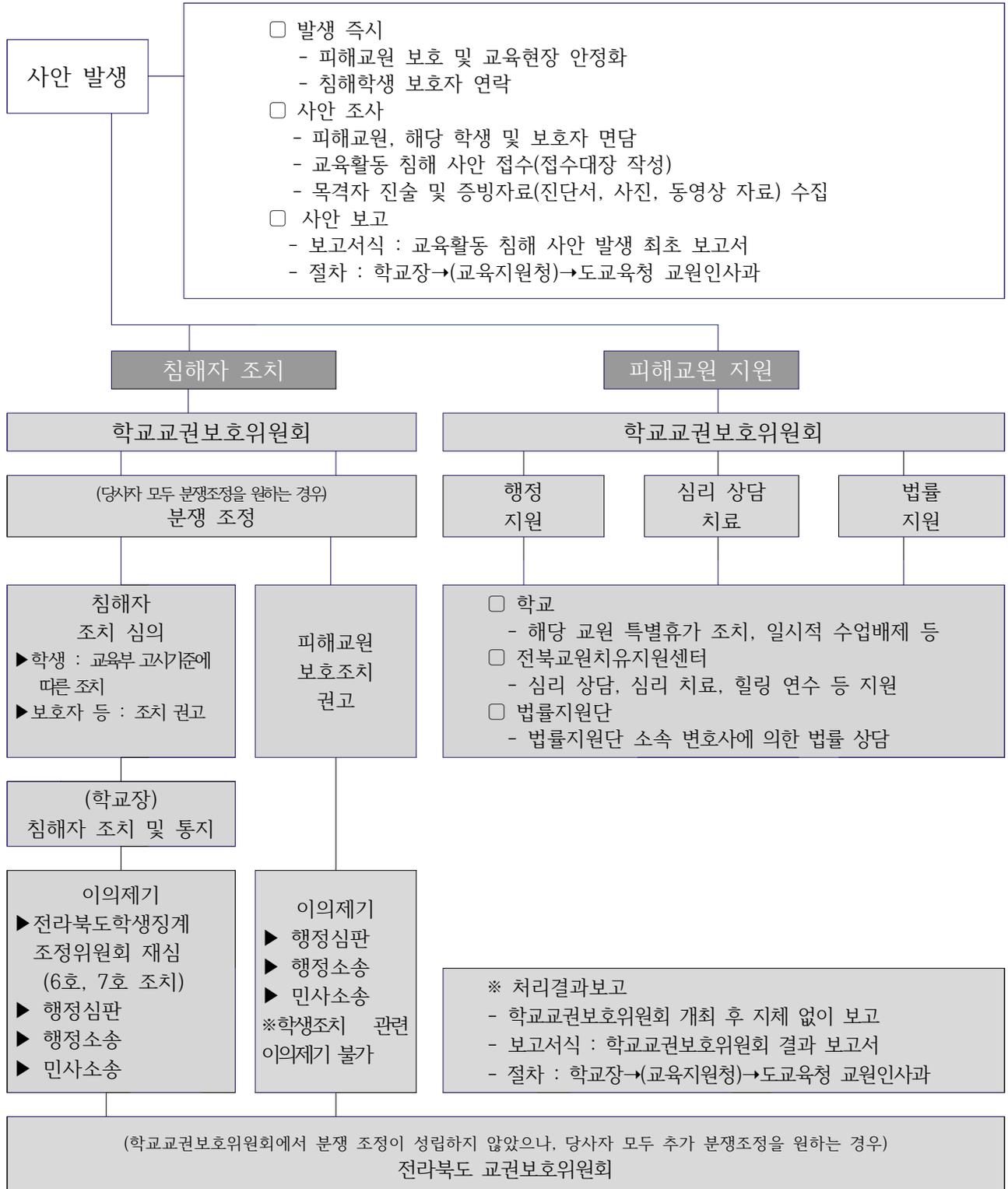
담당 부서	영역	교육과정 반영시수	원격수업 가능여부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시민 교육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연 6시간 이상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방법 등을 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교육 보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연 2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별 1회 이상 연 6시간 이상 *교과통합, 안전교육 통합,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수업자료: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어울림프로그램) https://www.stopbullying.re.kr/mps	안전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연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2항(2017.1.1.시행)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안전 교육
인성 교육	시간, 횟수는	○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의무	

담당 부서	영역	교육과정 반영시수	원격수업 가능여부	관련 근거(법령, 지침 등)	통합 가능 영역
		학교 자율 결정 교과통합 운영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권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권 교육 포함)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통일 교육	교과통합 운영	○	• 통일교육주간(6월)과 연계하여 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	의무
	환경 경속 능가 발전	교과통합 운영	○	•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학교교육과	독도 교육	교과통합 운영권장	○	• 독도의 날(10.25.)과 연계·운영 • 사회, 한국사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진로 교육	교과통합 운영	○	• 중·고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및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의무
	경제 금융	교과통합 운영권장	○	•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운영	권장
총무과	소방 훈련·교육	안전 교육 통합운영 (유·초·중·고·특수)	× 실습 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소방계획 수립]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훈련 실시(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안전 교육
시설과	학교 석면 안전 교육	연 1회 (석면 보유 학교)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 •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연 1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 (해양학교)	○	「전라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는 에듀넷타-클리어(www.edunet.net)

(에듀넷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 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 인성교육 116번 게시물)

[참고2] 교권침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참고3] 교직원 의무 연수 안내



순	교육명	횟수·시간	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참고1의 관련 근거 참조)	운영 방법
1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등 : 3년 15시간 이상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 : 연간 1회 이상 	원격 집합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9) 대면(對面)교육 필수 	집합
3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원격
4	성폭력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격 집합
5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격 집합
6	성매매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 	원격 집합
7	가정폭력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 	원격 집합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원격
9	자살예방 교육	연 4시간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 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등을 교육 	원격 집합
10	인권교육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편성 	원격
11	다문화이해교육	연간 2시간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원격 집합
12	통일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기관별로 특강 실시) 	집합
13	인성교육	연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원연수 계획 수립 	원격 집합
14	교권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원격 집합
15	청렴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조의2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對面)교육 필수 	원격 집합
16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포함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중복 가능 	원격 집합
17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28조 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교직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 	원격 집합
18	소방훈련·교육	연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집합
19	학교석면 안전교육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석면 보유학교) 	집합
20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해당 학교) 	원격 집합
21	사회복지교육	연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사이버교육, 헌혈, 사회봉사활동(지방공무원에 해당) 	원격 집합

※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원격연수로 개설(전북교육연수원)하여 운영

교 훈

꿈과 희망을 키우며 열심히 배우는 어린이

교 가



만 덕 산 힘 찬 줄 기 뽀 어 내 리 고



흐 르 는 연 내 천 에 하 늘 은 맑 아



희 망 에 넘 쳐 넘 쳐 모 인 우 리 들



슬 기 와 재 - 주 로 날 개 만 드 세



장 하 도 다 우 리 학 교 우 리 동 양 교



영 원 히 빛 내 어 라 우 리 동 양 교

상 징



교목 : 느티나무



교화 : 철쭉

꿈·지성·감성교육으로 비상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2021 동양교육과정

2021년 3월 인쇄

2021년 3월 발행

발행인: 최 성 현

발행처: 동양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9

홈페이지: <http://www.jb-dongyang.es.kr>

☎ 063 - 243 - 8106
